

표지 면지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설립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연구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설립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연구

/// 책임연구원 김재민(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

/// 공동연구원 장명선(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

Contents

I 서론 _ 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제3절 기대효과	7

II 국내 이주여성의 현황 _ 09

제1절 이주여성의 실태 및 문제점	11
1. 이주여성의 규모 및 거주 현황	11
3. 이주여성의 상담 현황 및 분석	21
3. 이주여성의 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26
제2절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황	30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30
2. 이주여성쉼터	32
3. 서울이주여성디딤터	33
제3절 이주여성 관련 법제 및 정책 현황	36
1. 이주여성 관련 법제	36
2. 이주여성 관련 정책 현황	40
제4절 시사점	48

III 이주여성 전문가 조사 결과 및 분석 _ 51

제1절 전문가 조사개요 53

제2절 이주여성 전문가 조사결과 55

- 1.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설치 필요성 55
- 2. 일시보호시설에서 지원해야 할 서비스 58

IV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운영방안 _ 63

제1절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지원 정책의 지향점 5

제2절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운영방안 6

- 1. 시설유형과 이용대상 66
- 2. 주요 기능과 지원서비스 67
- 3.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운영방안 69

참고문헌 _ 74

표 목차

표 II-1	전국 외국인 주민현황	12
표 II-2	서울시 외국인 주민현황	14
표 II-3	서울시 거주 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	17
표 II-4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인구(2012)	18
표 II-5	체류자격별 성별 취업률(2012)	18
표 II-6	연도별·성별 외국인 출국자 수	19
표 II-7	체류기간 연장의사	20
표 II-8	성별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경험 및 졸업 후 계획	20
표 II-9	전국 이주여성쉼터 운영현황	32
표 II-10	서울시 이주여성쉼터 운영현황	32
표 II-11	서울시 이주여성그룹홈 운영현황	33
표 II-12	이주여성디딤터 교육프로그램	35
표 II-1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정책 주요내용	42
표 II-14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귀환교육 프로그램	47
표 III-1	전문가 조사 개요	54
표 III-2	전문가 조사 내용	54
표 IV-1	일시보호시설 예상 인력운영(안)	71

그림 목차

■ 그림 II-1 ■ 전국 이주여성의 거주 지역별 분포현황	12
■ 그림 II-2 ■ 전국 외국인 주민 및 전국 이주여성 구성현황 비교	13
■ 그림 II-3 ■ 서울시 외국인 주민의 구성 및 서울시 이주여성 구성현황 비교	14
■ 그림 II-4 ■ 전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건수(2006~2011)	22
■ 그림 II-5 ■ 전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유형별 비율(2006~2011)	32
■ 그림 II-6 ■ 전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내담자 국적(2006~2011)	42
■ 그림 II-7 ■ 전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내용(2006~2011)	42
■ 그림 II-8 ■ 다문화가족과 한국인가족 이혼율 비교	28
■ 그림 II-9 ■ 연도별 다문화가족 이혼증가율	28
■ 그림 II-10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조직도	31
■ 그림 II-11 ■ 서울시 이주여성디딤터 전경	34
■ 그림 II-12 ■ 제2차 다문화 가족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41
■ 그림 II-13 ■ 서울시 “다(多)행복 서울 플랜”의 정책비전과 목표	34
■ 그림 II-14 ■ 서울시 “다(多)행복 서울 플랜”의 7대 핵심과제	4
■ 그림 IV-1 ■ 이주여성 관련 기관과 이주여성일시보호시설 연계방안	8
■ 그림 IV-2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통합 지원 체계	69

I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3절 기대효과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차별, 인종차별, 가부장제의 중첩적 차별에 직면하고 있는 이주여성 지원 필요
- 이주여성¹⁾은 노동, 결혼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성차별, 인종차별, 가부장제의 3중고를 겪으며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이주여성근로자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동시에 발생하는 열악한 근로환경, 임금체불, 문화적·경제적·언어적 차이로 인한 적응곤란,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성매매의 권유,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성, 비인도적인 단속과 추방, 입국을 도와준 브로커의 착취 등을 경험하고 있음. 또한 이주근로자 간 국제결혼 및 사실혼 관계로 인한 결혼 및 가족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가족 및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빈곤, 한국사회 부정적응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한 만큼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과 재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혼 및 양육, 배우자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자립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은 일부 인신매매업체에 속아 입국하여 대도시 유흥업소 및 기지촌 등으로 팔려가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들은 성매매 할당량의 압박, 임금체불, 생활제약, 업주의 횡포 및 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등도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1)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폭발적 증가로 “이주여성”을 결혼이주여성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본래의 의미를 살려 이주여성은 여성이주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성매매이주여성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함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위기상황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 사례별로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이주여성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주여성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지원되어야함

□ 이주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의 필요

- 이주여성은 체류비자만료, 임금체불, 이혼, 탈성매매 등의 위기상황 속에서 일정기간 머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 현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 시 최대 48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임시 숙식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그러나 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머물며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임시거처 제공에 불과하며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은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및 자활에 집중되고 있고 2년 까지 머물 수 있는 중장기 보호시설임. 그러나 폭력피해 이외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이주여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입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단기간 해결이 가능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이주여성이 1~3개월 정도 보호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은 없음
- 자치구별로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통합 및 적응을 중심으로 상담 및 사업을 운영함.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경우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이주여성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음
-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및 보호, 다문화가족 안정 및 사회통합 중심의 지원 정책은 체류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된 이주여성근로자, 가정폭력 문제 외로 이혼하는 결혼이주여성, 근로자나 유학생 등으로 입국하였으나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이주여성의 위기상황을 해결하는데 부족함. 따라서 이주여성의 위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목적과 기간 등에 따라 필요한 상담시설 및 보호시설을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귀국하는 이주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필요

○ 젠더를 고려한 인도주의적 이주여성 귀환 정책의 필요

-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결혼 등을 통해 이주한 국가에서 정착하고 사회적으로 통합이 되고자 하지만, 본국으로의 귀환을 원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귀국해야 하는 일부 이주여성도 있음. 또한 이주여성의 입국이 증가하고 국적취득이 제한적이라는 상황에서 정착하는 이주여성도 늘지만 귀환을 원하는 이주여성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음. 현재의 이주여성 지원 정책은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등 주로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국내 적응과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이주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하고 있는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의하면 이주자가 귀국을 원하는 경우 인도주의적 귀환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함. 인도주의적 귀환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이주자가 이주한 국가에 정착하기 어렵고, 정착에 따라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임.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귀환 정책은 밀입국, 인신매매 등 비공식 이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이주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귀환 정책에 따른 출신국가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착은 이주했던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양국 간 우호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음
- 그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정부와 NGO 등에서 일부 시행해 왔으나 젠더를 고려한 귀환 정책은 없었음.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점차 이주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귀환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

□ 연구목적

- 이주여성의 실태 및 정책현황 분석에 따른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의 설치 필요성 검토
 - 이주여성 관련 통계현황, 관련 기관 현황,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에 따른 일시보호시설 설치 필요성 검토
 - 이주여성인권 관련 전문가 조사에 따른 일시보호시설 수요 파악 및 필요성 검토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의 형태, 주요기능 및 운영방안 도출
 - 언어, 문화 차이 등 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른 일시보호시설의 형태 및 연계방안 제시
 - 일시보호시설 입주대상, 입주기간, 운영 시 최소 필요인원, 필수 지원서비스 도출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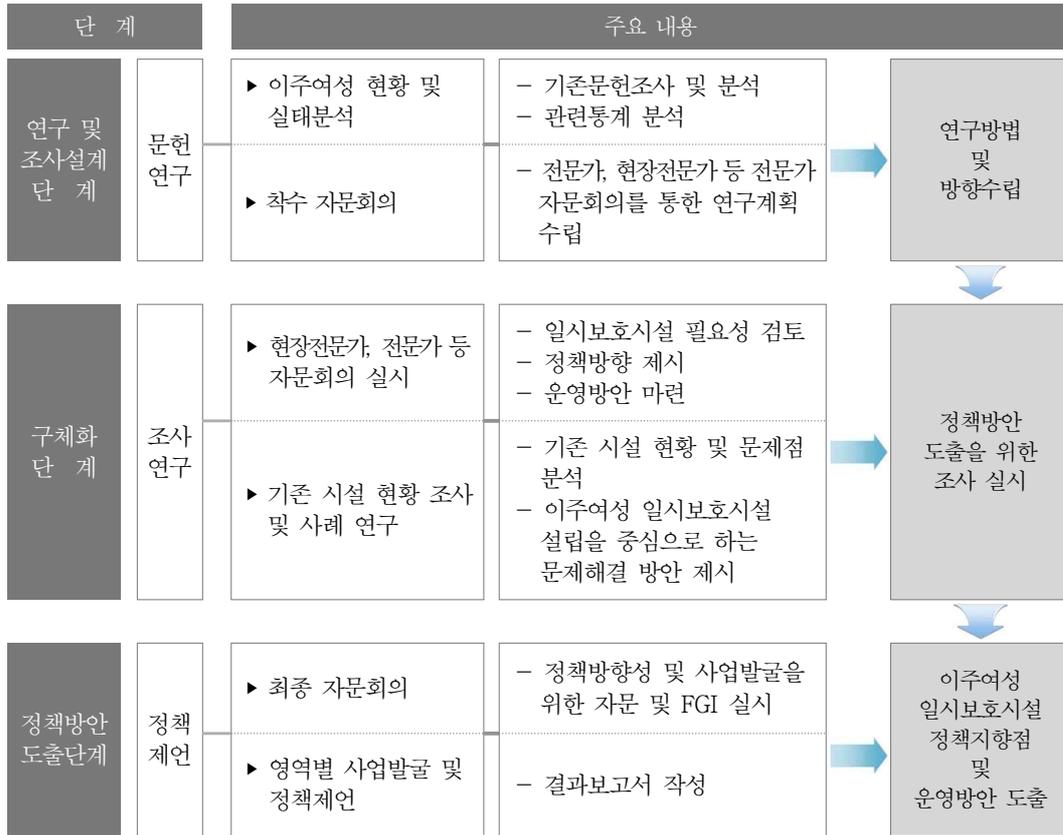
□ 연구내용

- 국내 이주여성의 규모, 체류 등의 현황 파악 및 이주여성 특성 분석
- 이주여성 관련 기관 현황 파악 및 검토
- 이주여성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및 검토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설치 시 상담시설 연계 검토 및 방안 제시, 이주여성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방안 제시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운영 방안 도출

□ 연구방법

- 이주여성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기존 문헌 및 통계 분석
 - 현재 운영 중인 이주여성 관련 법제, 제도, 정책 등 검토
 - 이주여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통계 및 법무부 출입국의 통계연보 분석
- 이주여성 전문가 및 기관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3회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 검토 및 운영 방안 검토
 - 이주여성쉼터소장, 이주여성상담소장, 다문화가족센터 실무자, NGO 활동가, 관련 연구자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연구체계



제 3 절 기대효과

- 이주여성의 사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이주여성정책 효율화
- 인권보호와 젠더의 관점이 반영된 이주여성 귀환정책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국내 체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보호 정책의 확대

Ⅲ

국내 이주여성의 현황

제1절 이주여성의 실태 및 문제점

제2절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황

제3절 이주여성 관련 법제 및 정책 현황

제4절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국내 이주여성의 현황

제 1 절 이주여성의 실태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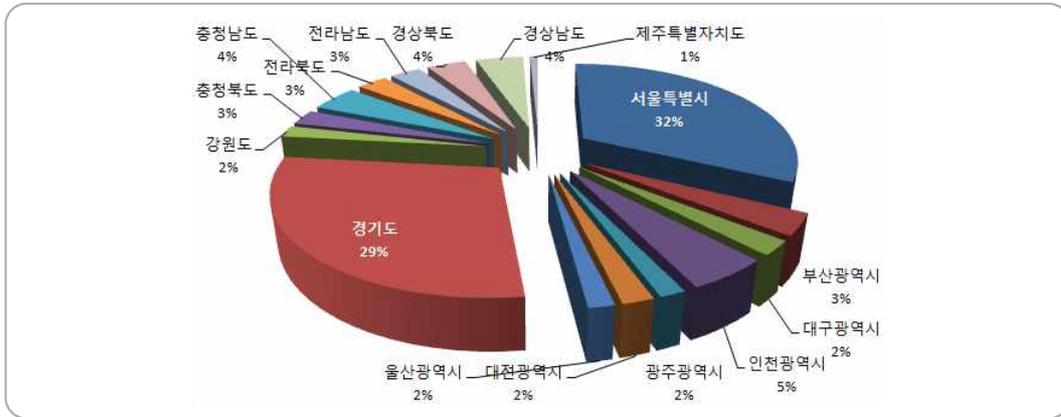
- 이 장에서는 이주여성에 관한 통계 및 체류, 관련 시설, 법제,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주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일시보호시설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함

1. 이주여성의 규모 및 거주 현황

- 이주여성의 규모 및 거주 현황은 2012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를 재분석하여 파악함

□ 이주여성의 지역별 거주 현황

- 전국 이주여성 현황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서울 219,584명(32.4%), 경기도 195,278명(28.8%), 인천 33,511명(4.9%)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가장 많고, 전체 이주여성의 66.1%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그 외 5개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까지 포함하면 이주여성의 77%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그림 II-1 ■ 전국 이주여성의 거주 지역별 분포현황

□ 전국 이주여성의 규모 및 구성

- 2012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1,409,577명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0,734,284명)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11년 (1,265,006명) 조사 때보다 144,571명(11.4%)이 늘어남²⁾

■표 II-1 ■ 전국 외국인 주민 현황

구분	외국인 주민수	비율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소계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전체	1,409,577	100	1,117,481	588,944	144,214	87,221	135,020	162,082	123,513	76,473	47,040	168,583
남성	731,470	51.9	622,472	408,912	19,630	42,250	67,990	83,690	22,829	4,268	18,561	86,169
여성	678,107	48.1	495,009	180,032	124,584	44,971	67,030	78,392	100,684	72,205	28,479	82,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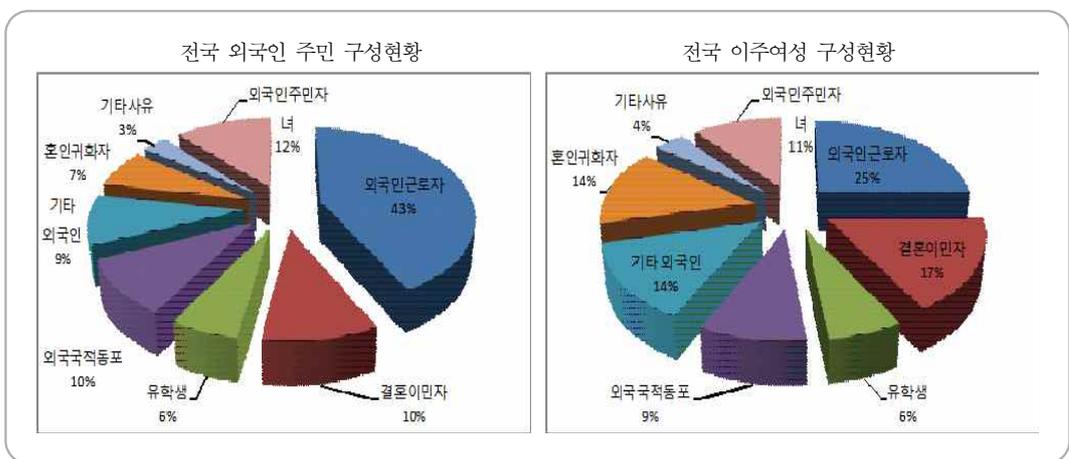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 2012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중 남성은 731,470명(51.9%), 여성은 678,107명(48.1%)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음
- 전국 외국인 근로자 성별비율은 남성이 408,912명(69.4%), 여성이 180,032명(30.6%)으로 남성 근로자가 389,282명 더 많음

2)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

※ 법무부의 체류외국인현황 통계는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와 90일 초과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발표

- 전국 결혼이주자 성별비율은 여성이 124,584명(93.6%), 남성이 19,630명(6.3%)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 104,954명 더 많음. 즉 결혼이민자 중 결혼이주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국적을 취득한 혼인 귀화자의 성별현황도 여성이 72,205명(99.4%), 남성이 4,268명(0.6%)으로 나타남. 따라서 결혼이주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전국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이주여성 678,107명 중 국적취득자는 100,684명(14.8%), 국적 미취득자는 495,006명(85.2%)이며, 이중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72,205명으로 나타나 이주여성은 주로 결혼을 통해 한국국적 취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³⁾. 이 결과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이주여성의 욕구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적취득자 비율이 낮아 국적 미취득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고용체류비자만료, 이혼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귀환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 그림 II-2 ■ 전국 외국인 주민 및 전국 이주여성 구성현황 비교

- 3) 행정안전부의 국적 미취득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 ▶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이 산업연수(D-3), 교수 등 취업분야(E-1~10), 방문동거(F-1) 중 ‘F-1-4’, 방문취업(H-2)인 자
 - * 체류자격 변경(법무부) : ‘11년 : D-3, E1~E10, F-1-4 → ‘12년 : D-3, E1~E10
 - ▶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이 거주(F-2) 중 ‘F-2-1’, 영주(F-5) 중 ‘F-5-2’, 결혼이민(F-6)인 자
 - * 체류자격 추가(법무부), ‘11년 : F-2-1, F-5-2 → ‘12년 : F-2-1, F-5-2, F-6-1
 - ▶ 유학생: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D-4-4’인 자
 -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이 “체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 ‘11년에 “체외동포”(국내거소신고자)에 해당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명칭 변경
 - ▶ 기타 :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국 이주민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43%, 외국인 주민자녀 12%, 결혼이민자 10%, 외국국적동포 10%, 기타외국인 9%, 혼인귀화자 7%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전국 외국인 주민 구성현황과 달리 전국 이주여성의 구성현황은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이주여성의 경우 근로자가 25%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 비율보다 낮은 반면에 결혼이민자(17%), 혼인귀화자(14%), 기타 외국인(14%)은 전체 외국인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외국인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Ⅱ-2 참조)
 - 전국 이주여성의 경우 혼인귀화자+결혼이민자 비율이 31%에 달해 이주여성은 결혼을 통한 국내 거주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서울 이주여성의 규모 및 구성

- 전국에서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은 총 406,293명(28.8%)로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의 4%에 달함. 또한 서울은 전국에서 경기도(424,946명, 30.1%) 다음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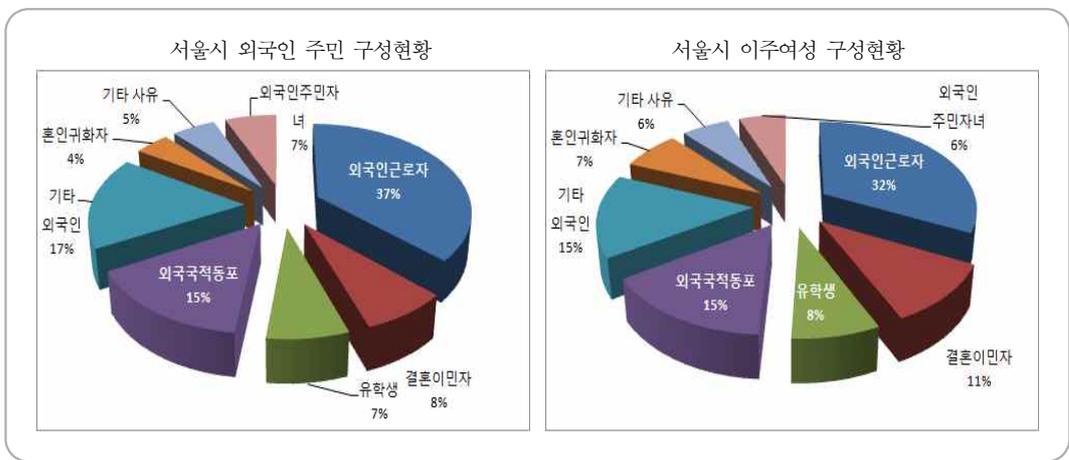
Ⅱ 표 II-2 Ⅱ 서울시 외국인 주민 현황

구분	외국인 주민수	비율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소계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전체	406,293	100	341,121	150,433	31,217	29,063	61,901	68,507	39,164	17,380	21,784	26,008
남성	186,709	46.0	163,175	79,631	7,365	12,170	28,520	35,489	10,329	1,524	8,805	13,205
여성	219,584	54.0	177,946	70,802	23,852	16,893	33,381	33,018	28,835	15,856	12,979	12,803

자료: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 서울시 외국인 주민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150,433명(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외국인 68,507명(16.9%), 외국국적동포 61,901명(15.2%), 결혼이민자 31,217명(7.7%), 유학생 29,063명(7.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음
- 성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남성이 79,631명(52.9%), 여성이 70,802명(47.1%)으로 남성이주근로자가 8,82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결혼이주자 성별 비율은 여성이 39,708명(81.7%), 남성이 8,889명(18.3%)으로 나타나 서울수도 결혼이주여성이 30,819명 많음을 알 수 있음. 서울수도 결혼이주 부분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성별 한국귀화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서울시 이주여성 219,584명 중 국적 취득자는 28,835명(13.1%), 국적 미취득자는 177,946명(80.9%)로 나타나 서울에서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음⁴⁾. 그러나 전국 국적 미취득 여성 비율 85%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이주여성 중 혼인 귀화자는 15,856명으로 서울시 이주여성 귀화자도 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비율(귀화자 중 55.0%)이 높지만 기타사유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비율도 45.0%인 것으로 파악됨
- 전국 외국인 주민의 구성현황과 서울시 외국인 주민의 구성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남성(51.9%)의 비율이 여성(48.1%)보다 조금 더 많으나 서울의 경우 남성(46.0%)에 비해 여성(54.0%)의 거주비율이 높아 서울은 이주남성보다 이주여성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II-1, 표 II-2 참조)



자료: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 그림 II-3 ■ 서울시 외국인 주민의 구성 및 서울시 이주여성 구성현황 비교

4) 행정안전부의 통계는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함. 국적 미취득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 ▶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이 산업연수(D-3), 교수 등 취업분야(E-1~10), 방문동거(F-1) 중 'F-1-4', 방문취업(H-2)인 자
 - * 체류자격 변경(법무부) : '11년 : D-3, E1~E10, F-1-4 → '12년 : D-3, E1~E10
- ▶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이 거주(F-2) 중 'F-2-1', 영주(F-5) 중 'F-5-2', 결혼이민(F-6)인 자
 - * 체류자격 추가(법무부), '11년 : F-2-1, F-5-2 → '12년 : F-2-1, F-5-2, F-6-1
- ▶ 유학생: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D-4-4'인 자
-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 '11년에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자)에 해당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명칭 변경
- ▶ 기타 :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그림 II-3■**에서 서울시 거주 외국인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 37%, 기타 외국인 17%, 외국국적동포 15%, 결혼이민자 8%, 외국인주민자녀 7%, 유학생 7%, 기타 사유 5% 혼인귀화자 4%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에 비해 서울 거주 이주여성은 외국인근로자가 32%로 서울시 전체 비중에 비해 약간 낮으나 기타 외국인(15.0%), 결혼이민자(10%), 혼인귀화자(7%)는 서울시 전체 외국인 주민 구성현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경우에도 전체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12%이나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비율은 18%로 나타나 서울시도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이 많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서울은 전국(3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외국인 여성근로자 비율은 25%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시 외국인 여성근로자 비율은 32%로 나타나 서울의 경우 취업으로 인해 거주하는 이주여성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전국 이주여성 및 서울시 이주여성 규모 및 구성을 살펴본 결과, 현재 집계되고 있는 이주여성 통계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여성의 규모는 파악할 수 있으나 이주여성이 한국 내 들어와 결혼 및 이혼, 귀화 및 귀환, 성산업 유입 및 탈성매매 등 이주여성의 규모 및 구성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한국에 영구거주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그러나 전국 이주여성 중 국적 미취득자의 수가 85%로 이들 중 일부가 결혼을 통해 국적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주여성은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체류비자가 만료된다고 볼 수 있음. 이 경우 한국에 계속해서 머물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음
 - 참고적으로, 이주여성 중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자가 된 결혼이주여성은 2008년 8,993명, 2009년 9,096명, 2010년 8,820명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결혼이주여성은 2007년 7,64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2년 9월 현재 10,094명에 달했음⁵⁾

5)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혼이민자 불법체류 및 출국현황」자료에 의하면, 2008년 6월 기준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주여성은 104,290명이고, 이 중 불법체류자는 8,137명(7.8%)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숫자도 해마다 급증하여 2004년 3,249명, 2005년 4,359명, 2006년 5,937명, 2007년 7,323명, 2008년 6월말 기준 8,137명이라고 한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이주여성의 이혼율 급증을 꼽고 있음(헤럴드경제, 2008.10.22)

□ 서울시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현황

- 국적별 서울시 이주여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주여성근로자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64,446명으로 90%이상을 차지하였음
- 결혼이주여성 역시 한국계 중국인이 8,490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인이 5,484명(23.0%), 베트남인이 3,950명(16.6%), 일본인이 2,162명(9.1%) 순으로 나타남
- 유학생의 경우 중국인이 10,524명(6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몽골 1,400명(8.3%), 일본 1,048명(6.2%) 순이었음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이 16,533명으로 약 50%를 차지하였고, 미국이 11,000명(33.0%)으로 그 뒤를 이었음
- 서울시 이주여성은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베트남 국적의 이주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시 중국과 베트남 같이 이주여성 비율이 높은 주요 국가 중심의 통역 인력배치, 각 국가별 문화 차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됨

▣ 표 II-3 ▣ 서울시 거주 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중국	중국 (한국계)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미국	기타
외국인노동자	70,802 (100)	1,043 (1.5)	64,446 (91.0)	220 (0.3)	318 (0.4)	194 (0.3)	592 (0.8)	1,583 (2.2)	2,406 (3.4)
결혼이주여성	23,852 (100)	5,484 (23.0)	8,491 (35.6)	2,162 (9.1)	430 (1.8)	3,950 (16.6)	927 (3.9)	303 (1.3)	2,105 (8.8)
유학생	16,893 (100)	10,524 (62.3)	649 (3.8)	1,048 (6.2)	1,400 (8.3)	381 (2.3)	93 (0.6)	272 (1.6)	2,526 (15.0)
외국국적동포	33,381 (100)	-	16,533 (49.5)	234 (0.7)	-	-	-	11,000 (33.0)	5,614 (16.8)
기타	33,018 (100)	3,292 (10.0)	16,627 (50.4)	1,749 (5.3)	686 (2.1)	414 (1.3)	810 (2.5)	1,724 (5.2)	7,716 (23.4)

자료: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 기타 국가에는 대만,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포함

□ 이주여성의 고용현황

- 통계청은 2012년부터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고,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제공하기 위해 법무부 「등록외국인 명부」와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명부」에서 전국의 만 15세 이상 외국인 중 1만 명 표본을 추출하여 고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2년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는 이주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여성 유학생의 고용현황 및 경제활동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표 II-4 ■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인구(2012)

단위: 천명(%)

혼인상태별	15세 이상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계	1,114	824	791	290	74.0	71.0
배우자 있음	711	536	515	175	75.3	72.4
배우자 없음	403	288	277	114	71.6	68.7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노동조사(2012)

- 2012년 통계청의 외국인고용노동조사를 살펴본 결과,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경제 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각 75.3%, 72.4%, 배우자가 없는 경우 71.6%, 68.7%로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II-5 ■ 체류자격별 성별 취업률(2012)

단위: 천명(%)

체류자격별	취업자	남성	여성
계	791(100)	518(100)	274(100)
비전문취업(E-9)	238(30.1)	214(41.3)	24(8.8)
방문취업(H-2)	241(30.5)	138(26.6)	103(37.6)
전문인력(E-1~E-7)	47(5.9)	30(5.8)	18(6.6)
유학생(D-2, D-4-1)	13(1.6)	5(1.0)	8(2.9)
재외동포(F-4)	99(12.5)	61(11.8)	38(13.9)
영주(F-5)	47(5.9)	24(4.6)	23(8.4)
결혼이민(F-2-1, F-6)	60(7.6)	14(2.7)	46(16.8)
기타	45(5.7)	32(6.2)	12(4.4)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노동조사(2012)

○ 이주민의 체류자격별 성별취업률을 살펴본 결과, 전체 취업자의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 30.1%, 방문취업 30.5%, 재외동포 12.5% 순으로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러나 여성취업자의 경우 방문취업(37.6%)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16.8%)의 취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자격으로 입국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주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이주여성 근로자로 입국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이주여성의 귀환현황

- 이주여성의 본국 귀환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음. 다만 1년 초과 체류한 외국인 출국자 수를 성별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년마다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외국인 남성의 경우 2006년에 80,473명이 출국하여 가장 많이 출국한 것으로 나타남. 그에 비해 외국인 여성은 2010년에 가장 많이 출국한 것으로 나타남(67,434명)
- 이주여성의 귀환현황을 1년 이상 초과체류자의 출국현황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주여성 출국자수가 연도별로 소폭 감소와 증가를 거듭하다가 2010년도에 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함. 다만 국내 이주여성의 장기 거주 및 귀화가 늘어나는 만큼 이혼, 체류비자만료 등의 문제로 이주여성의 귀환도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됨

표 II-6 연도별·성별 외국인 출국자 수

단위: 명(%)

성별 \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남자	43,417 (65.0)	58,974 (65.8)	77,799 (65.8)	80,473 (66.2)	75,948 (67.6)	72,563 (52.8)
여자	23,367 (35.0)	30,644 (34.2)	40,462 (34.2)	41,008 (33.8)	36,362 (32.4)	67,434 (48.2)

자료: 통계청(<http://kosis.kr>)

○ 참고적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근로자 870명(남성 686명, 여성 184명) 중 귀국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47.1%, 귀국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는 21.3%, 귀국할 의향이 없음은 24.0%로 나타남. 그러나 여성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가 없어 이주여성의 귀환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권영길 외 연구(2008)에 의하면 이주근로자의 47.1%는 본국으로 귀환하겠다는 의사가 있음

【표 II-7】 체류기간 연장 의사

체류자격별	구성비 합계	체류 (원하지 않음)	체류(원함)					
			총계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자격 취득	한국국적 취득	기타
계	100	15.8	84.2	47.9	5.9	16.9	11.1	0.5
비전문취업(E-9)	100	20.8	79.2	71.9	3.3	2.3	1.5	0.2
방문취업(H-2)	100	7.8	92.2	45.6	11.0	28.5	6.3	0.8
전문인력(E-1~E-7)	100	33.0	67.0	58.1	2.1	5.5	1.1	0.2
유학생(D-2, D-4-1)	100	36.5	63.5	48.0	10.6	3.8	0.8	0.3
재외동포(F-4)	100	12.6	87.4	51.8	3.3	23.9	7.6	0.9
결혼이민(F-2-1, F-6)	100	2.4	97.6	18.0	1.8	24.6	52.9	0.3
기타	100	24.2	75.8	44.9	4.5	13.4	12.8	0.2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노동조사(2012)

- 【표 II-7】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의사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음. 이주민의 84.2%가 체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그 중 결혼이민(97.6%)과 방문취업(97.2)이 가장 높은 체류의사를 밝히고 있음. 가장 낮은 체류의사를 밝힌 것은 유학생(63.5%)과 전문인력(67.0%)으로 나타남
- 외국인 응답자의 47.9%가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체류를 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경우 한국국적 취득을 통해 체류연장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았음. 따라서 결혼이주를 제외한 이주민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고 예측됨. 또한 이주민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체류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출국 전까지 불법체류자가 될 것으로 예측됨

【표 II-8】 성별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경험 및 졸업 후 계획

취업경험	구성비합계	취업여부		졸업 후 계획	
		없었음	있었음	한국체류	한국에서 출국
유학생	100	70.3	29.7	47.2	52.8
남자	100	74.5	25.5	49.2	50.8
여자	100	66.4	33.6	45.3	54.7

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노동조사(2012)

-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경험 및 졸업 후 계획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25.5%, 여성의 33.6%가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유학생의 취업률이 좀 더 높았음. 졸업 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남성 50.8%, 여성 54.7%가 한국에서 출국하고자 하였으며 여성유학생이 출국하고자하는 의지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유학생은 졸업 후 절반 정도가 한국에 남아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
- 이주민의 귀환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주민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지속적인 취업 의사가 있었음.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경우 귀화신청을 통한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체류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았음

3. 이주여성의 상담 현황 및 분석

- 이 장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상담유형 및 상담내용 분석 자료를 통해 통계자료에서는 알기 어려운 이주여성의 위기상황 유형을 파악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이주여성 상담현황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실시한 상담현황⁶⁾ 분석에 따르면 이주여성 대상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도 상반기 월평균 상담건수는 5,159건으로 2007년도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6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상담건수는 162,560건이나 됨

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2011년 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면서 2006년 11월-2011년 6월까지 약 5년에 걸친 상담 내역을 분석한 자료.



* '09년부터 지역센터의 상담건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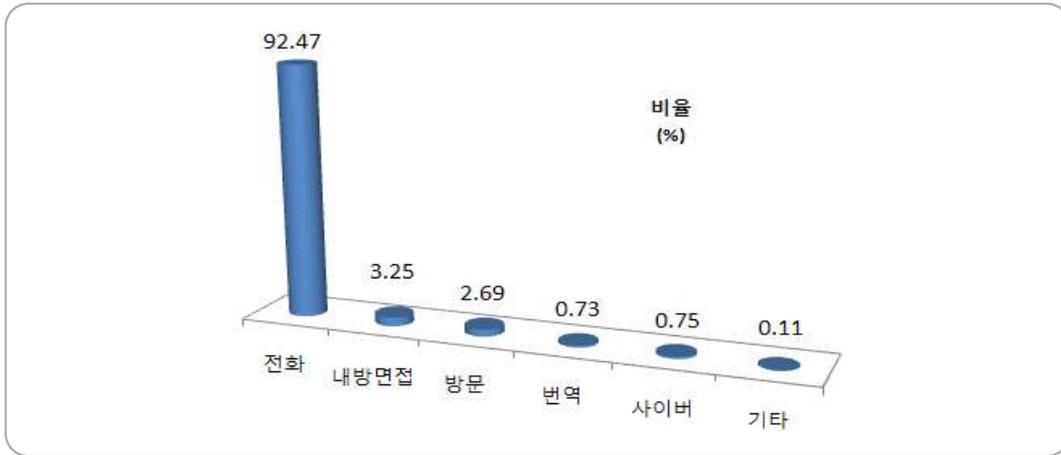
자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2012), 『나는 이주여성이다 - 이주여성상담분석과 인권실태』

■그림 II-4 ■ 전국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상담건수(2006~2011)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 건수의 폭발적 증가 현상은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청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그러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이주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역량과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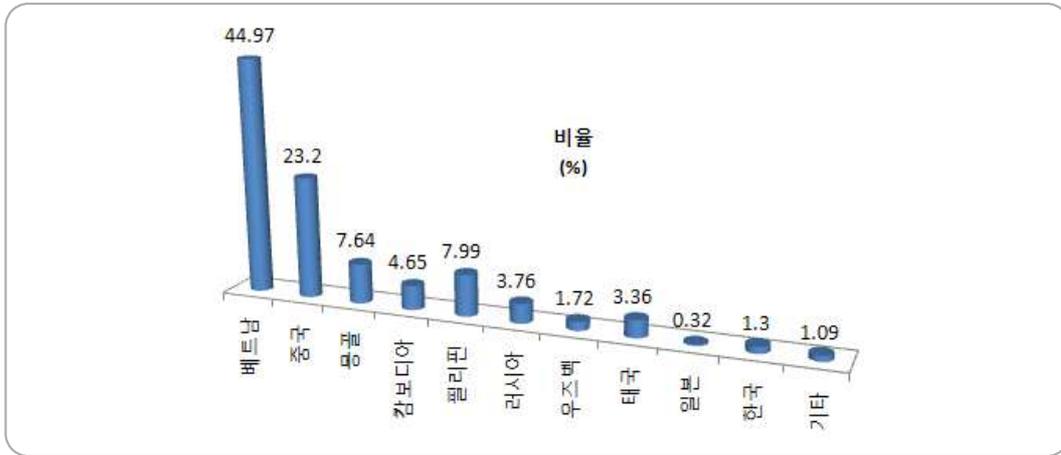
□ 상담유형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24시간 상담체제라는 특성 상 전화 상담 비중이 96.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 면접상담은 중앙(1.99%)에 비해 지역센터의 비율(8.82%)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센터가 내담자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접상담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함
- 그 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병원, 정신보건센터,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상담은 방문상담(2.69%)으로 지원함. 그 외 서류작성, 편지 등 번역의뢰(0.73%) 상담 등이 있으며 사이버 상담(0.75%)도 있었음. 사이버 상담의 경우 2007년 27건 → 2008년 163건 → 2009년 295건 → 2010년 349건 → 2011년 350건(1~6월)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 그림 II-5 ■ 전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유형별 비율(2006~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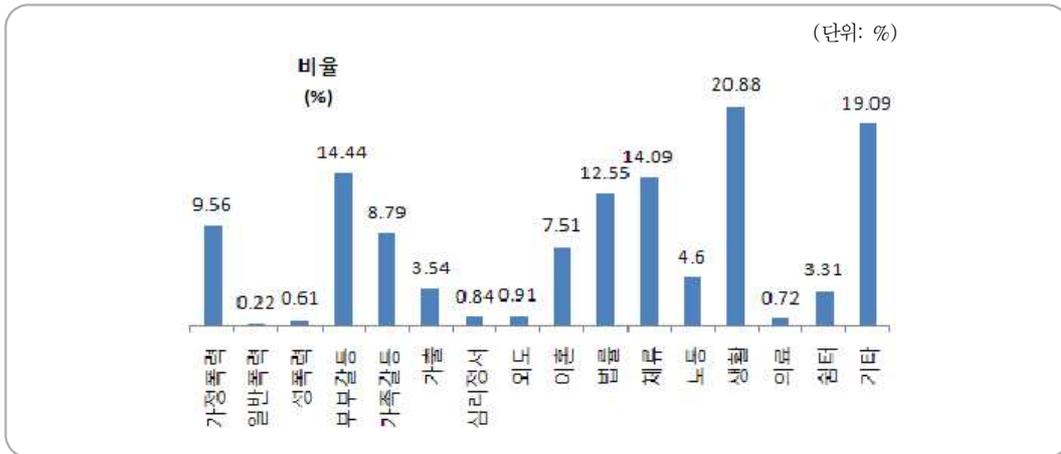
- 상담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면접을 통한 심층상담(73.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차 상담권고(12.9%), 전문기관 연계(4.2%), 보호시설 연계(0.9%), 법률기관(0.8%) 순이었음. 그 외 수사기관의 연계는 0.5%, 경찰에게 현장출동요청은 0.1%였음
- 이주여성 상담유형의 분석결과, 접근이 용이한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1차로 진행하여 내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대면하는 2차 심층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임. 그러나 전화상담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담 및 방문 등 직접 대면하는 심층상담으로 연계하여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상담연계를 제외한 전문기관 및 보호시설 연계에 대한 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보호시설에 대한 이주여성의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의 국적을 살펴본 결과, 베트남이 44.97%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중국 23.20%, 필리핀 7.99%, 몽골 7.64%, 캄보디아 4.65%, 러시아 3.76%, 태국 3.36%, 우즈벡 1.72%, 한국 7.30%, 기타국가 1.09% 순으로 나타남. 이주여성 국적별로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여성의 상담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 입국한 여성은 중국 국적의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으나 그에 비해 베트남 이주여성들의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 이주여성에 비해 베트남 이주여성의 상담비율이 높은 이유는 베트남 이주여성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상담소 운영 시 중국과 베트남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자 확보가 필수임



■ 그림 II-6 ■ 전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내담자 국적(2006~2011)

□ 상담내용

- 전체적인 상담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문제가 20.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기타(19.09%) 상담을 제외하고, 부부갈등 14.44%, 체류문제 14.09%, 법률 문제 12.55%, 가정폭력 9.56%, 노동상담 4.66%, 가출 3.54% 순으로 나타남



자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2012), 『나는 이주여성이다-이주여성상담분석과 인권실태』

■ 그림 II-7 ■ 전국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상담내용(2006~2011)

- 생활문제 상담은 가장 많은 20.88%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어교육, 문화차이, 병원, 은행, 시장, 육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의료비 상담도 상당히 많음

- 체류상담은 5년 간 총 14.09%(22,900건)로 나타남. 체류문제는 이주여성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이혼상담의 경우 부부갈등이 3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이 28.3%, 경제적 무능 8.4%, 고부갈등 7.2%, 거짓정보 5.6%, 정신적 문제 4%, 실망이 3.2%로 나타남. 가정폭력 외에도 부부갈등 및 가족갈등 등에 따른 이혼사유 상담비율이 높았음
- 법률상담은 12.55%(20,405건)로 이혼에 따른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문제, 재혼 등으로 전체 법률상담에서 이혼문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해당하고 있음
- 노동상담은 4.6%(7,478건)으로 주로 통역요청이 많고 사업장 변경과 임금체불, 고용계약, 구직과 직업훈련에 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쉼터상담은 3.31%(5,373건)이었음.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과 부부갈등이 있을 때 주로 쉼터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음
- 기타상담의 경우 19.09%(31,031건)로 그 비율이 체류상담보다 높음. 또한 기타 상담의 높다는 것은 이주여성의 상담내용이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자국 상담원과의 상담, 상담확인서 발급, 면접상담요청, 방문상담요청, 개인 신상 문제, 제3자와의 전화통화 등 이주여성의 한국 내 생활문제를 해결 위한 기본적인 상담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
- 성매매상담은 0.1%(164건)로 주로 연예인 비자 및 관광비자로 입국하거나 위장결혼 후 성매매 강요가 주요 상담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함
-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은 이주여성 중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의 이혼, 법률, 부부 및 가족갈등, 가정폭력, 체류 등으로 제한되고 있었음. 그러나 이주여성 상담 중 결혼이주여성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생활, 노동, 성폭력, 성매매, 기타 상담도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위주의 상담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임
- 상담조치 결과 중 2차 상담 외 관련기관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장 많았으며, 그 중 보호시설 연계가 1,516건으로 가장 많았음. 즉 이주여성과 상담자들은 쉼터를 위기상황 시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쉼터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외의 사유로 이혼하거나 다른 위기 상황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의 경우 시설 입주가 쉽지 않은 실정임

3. 이주여성의 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⁷⁾

○ 이 장에서는 이주여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존 연구 및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간략히 살펴봄. 이를 통해 이주여성의 체류유형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함

□ 이주여성근로자의 문제점

- 이주여성근로자의 현황에 관한 조사 및 선행연구로는 이주여성근로자의 인권실태(2002), 생활 실태 및 안전에 관한 연구(2009),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2011) 등이 있음
- 2002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이주여성 노동자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이주여성근로자는 힘든 노동강도 30.2%, 열악한 작업조건 27.4%, 직업병 19.1%, 산업재해 9.2%, 임금체불 21.5%, 저임금 29.9%, 한국노동자와의 갈등 15.1%, 상사와의 갈등 22.2%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언어폭력에 있어서는 15.2%가, 성희롱 9.4%, 폭행 8.2%, 성폭행 4.4% 순으로 문제가 있음. 이주여성근로자가 차별을 경험하는 대상자는 사장 30.7%, 상사 19.3%, 동료 한국인노동자 16.2%, 가게주인 8.9% 순이었음(한국염, 2007 재인용)
- 이주여성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임금체불과 휴일·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음(12.7%)이고, 2순위는 법정근로시간이 준수되지 않음, 3순위는 각종수당이 지급되지 않음(10.1%), 4순위는 인종차별 및 위험한 작업환경(7.6%), 5순위는 폭언 및 폭행과 성차별(6.3%), 6순위는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권리주장의 어려움 및 성희롱, 7순위는 산업재해, 8순위는 출산휴가 사용 불가 및 성매매, 9순위는 음식 문제로 나타남(김창연 외, 2009)
- 이주여성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3년 동안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음. 그러나 고용허가비자가 만료될 경우 재고용 최대 3년 밖에 인정이 안

7)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주여성과 관련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민간보고서(shadow report)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함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이주여성근로자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등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이주여성근로자가 결혼이주여성이 되기도 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이주여성근로자가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주여성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여성근로자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미등록 이주여성근로자, 결혼이주여성근로자, 유학생신분의 이주여성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위기를 파악하고 해결하기가 어려움

- 물론 이주여성근로자는 법적으로 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한국인과 같이 보호를 받으며 상담소 및 피해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 2011). 그러나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근로자는 해고위협,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장기간 조사, 고용불안 등으로 신고하기도 어려움. 게다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소 및 쉼터의 경우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성폭력피해 이주여성 근로자도 도움받기 쉽지 않음. 또한 이주노동자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 당사자들 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취급하여 수사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이주여성근로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및 현장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정병호 외, 2011)

□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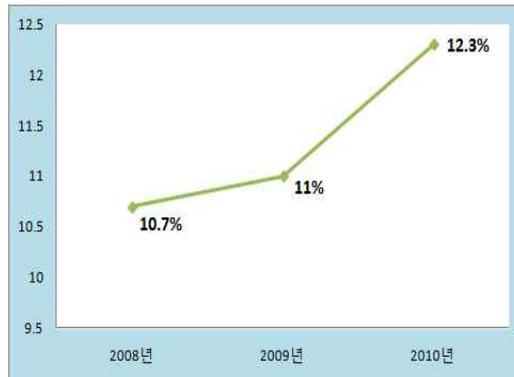
-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및 문제점 대해서는 통계청 자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2011)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았음
-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신매매 같은 결혼중개과정,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갈등,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의 평균결혼기간은 4.7년임.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4,319건으로 전체 이혼 중 12.3%에 해당함. 이혼하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이혼과 사별 등으로 홀로된 결혼이주여성은 2008년 8,993명, 2009년 9,096명, 2010년 8,820명으로 조사됨
- 이혼평균연령은 남성은 46.9세, 여성은 37.8세,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율은 15.9%, 5년 미만인 60.7%임. 이혼형태는 협의이혼이 50.8%, 재판이혼인 49.3%

로 나타남. 이혼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여성이 68%, 남편이 요구한 경우는 29.3%로 이주여성의 요구가 훨씬 높음⁸⁾

■ 그림 II-8 ■ 다문화가족과 한국인가족 이혼율 비교



■ 그림 II-9 ■ 연도별 다문화가족 이혼증가율



자료: 통계청 <http://kostat.go.kr>

- 이주여성의 재판이혼과정은 진술서 작성부터 증거확보, 번역과 통역, 법정 출석 등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이 재판이혼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체류문제 해결과 함께 이주여성들이 당하는 가정폭력 및 인권침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⁹⁾
- 귀책사유(가정폭력 등)가 내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체류 및 귀화신청이 가능함. 그러나 아이가 없거나 아이에 대한 면접권만 있을 경우에 체류신청 이후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림. 귀책사유의 경우에도 가정폭력만 인정하며, 위자료가 적은 경우 출입국관리국에서 임시체류비자를 발급하여 체류가 불안정해지는 사례도 있었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 2011)
- 이혼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귀책사유 증명이 어렵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및 면접권 소유 여부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의 쉽지 않아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 즉 가정폭력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혼하거나 가출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이주민 간 다문화가정의 이혼문제는 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현재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가 한국인남성+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에 초

8) 행정안전부(2012), “통계청 이혼통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9) 서울가정법원의 안종화 판사(다문화가정 이혼사건의 특성, 법적, 제도적 개선 및 지원방향, 2011년 6월 11일, 가정법률상담소 토론회)

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 간 결합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이혼 문제와 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이 필요함

□ 성매매 이주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이주여성의 규모와 현황은 조사가 어려워 주로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주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주로 예술홍행비자, 위장결혼, 유학생 신분 등으로 입국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성매매업소에 유입됨
- 예술홍행비자(E-6)로 입국하는 여성의 75.6%가 성매매 여성으로 추측되며, 예술홍행사증 소지자는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최근 경찰 적발사례에 의하면 위장취업이 아닌 국내 공연을 목적(E-6 사증)으로 입국하여 일하던 외국인 여성 중 일부가 성매매 업소에 넘겨진 사례를 비롯하여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집단에서의 성매매 사례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있었음. 또한 성매매 여성은 점차 단기체류비자를 가진 이주여성에서 장기체류 및 귀화 이주여성으로 확산되고 있음(설동훈 외, 2011)
- 성매매 이주여성들은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보다는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임금체불, 여권압수, 폭력, 잦은 이송, ‘주스할당제’¹⁰⁾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 열악한 근로환경 및 반인권적인 처우로 인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고 탈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매매 이주여성의 문제는 이주여성의 국제인신매매 문제, 이주여성의 임금체불 및 부당한 대우에 따른 노동문제, 탈성매매 시 도움을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체류문제, 유학생 및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근로자의 성산업 유입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 즉 성매매 이주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금지, 임금착취금지, 인권보호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10) ‘주스할당제’란 성매매업체들이 여성들이 매달 팔아야 하는 주스 할당량을 정하고, 정해진 할당량을 모두 팔았을 경우 주스판매액의 20~30%를 여성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이주여성들은 가게 손님들에게 주스를 팔아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게 됨. 이주여성들은 업주로부터 주스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음. 게다가 여성들이 업소에서의 임금착취로 인한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겪어 ‘불법체류’를 감수하면서 까지 업소를 이탈함(정병호 외, 2011)

제 2 절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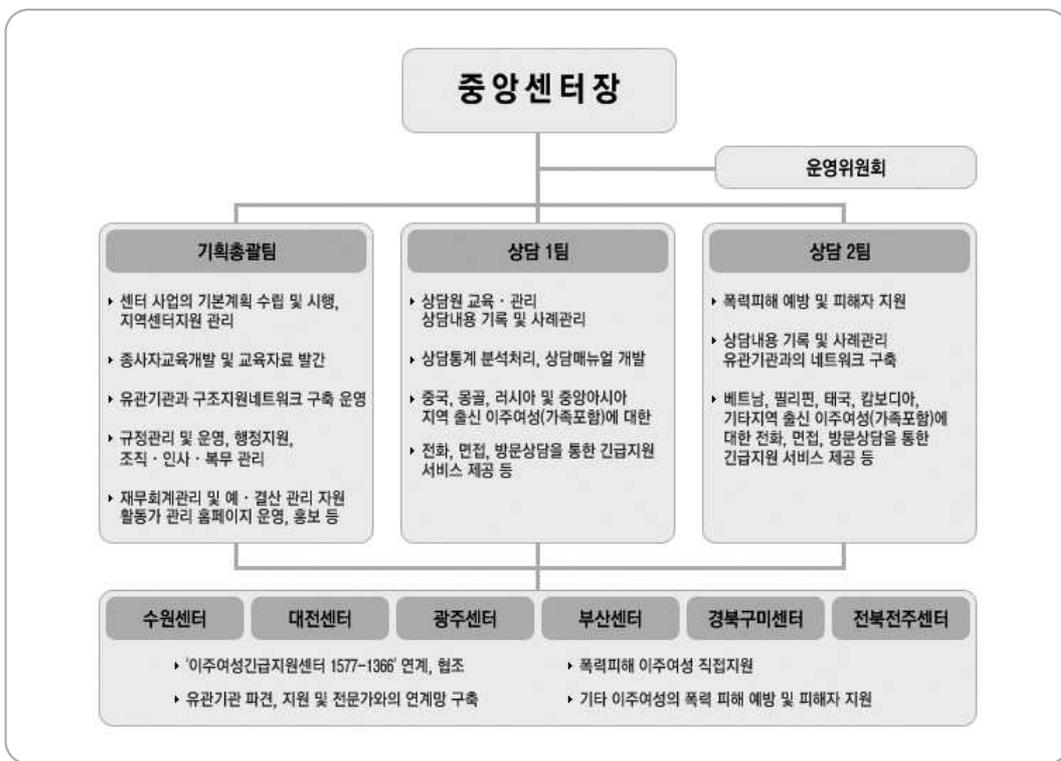
- 이 장에서는 이주여성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의 필요성 측면에서 현재의 이주여성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1.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¹¹⁾

-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발생 시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고, 인권침해의 잠재요소를 개선하는 사전예방을 시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을 설치하였음
- 2006년 11월에 개소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한국 사회에 이주한 이주여성들이 자국어로 상담과 통역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기관설립 취지에 따라 최대 48시간 머물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주요지원 기능
 - 상담서비스: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대 등 피해를 입어 긴급 보호가 필요할 때 전화, 면접, 방문, 사이버상담을 지원함. 주요상담 내용은 부부 갈등, 가족갈등,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 상담과 정보안내임
 - 외국어 상담 서비스(11개):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영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 시설서비스: 위급상황 시 24시간(최대 48시간) 긴급보호시설 제공
 - 의료서비스: 병원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
 - 법률서비스: 체류, 국적 취득, 가정 문제 등에 대한 법률 상담
 - 기관 연계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찰, 전문상담소, 이주성 보호시설, 관련 법률기관,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 등과 연계

11) ※ 홈페이지 www.wm1366.or.kr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과 여성 긴급전화 1366과의 차이점
 - 1577-1366센터와 1366센터는 상호협력기관이며 두 곳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1366센터에는 외국어전문상담원이 없어 한국어가 서툰 여성결혼이민자는 1577-1366을 이용하는 게 더욱 편리함



자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홈페이지

■ 그림 II-10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조직도

○ 운영현황('12년)

- 전국 7개소 운영 :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부산, 전주, 구미
- 2006년 11월 개소한 이래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포함하여 총 49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상담분석에서 볼 수 있듯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센터 내 최대 4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에 불과함. 또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보호시설은 입주자에 대한 심층상담 및 문제해결을 하기 어려움

2. 이주여성쉼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의료·법률·출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 2008년 4개소만이 지원 대상이었던 것이, 2012년 현재 시도별 1개소와 서울, 경기 지역 각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8개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 주요 지원 서비스
 - 기본서비스: 숙식의 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보호
 - 상담서비스: 남편 및 가족상담을 통한 가정회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 의료서비스: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 법률서비스: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귀환서비스: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 기타 지원서비스: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운영현황('12년)
 - 여성가족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쉼터는 전국에 시·도별 1개소씩 총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은 2곳에 개소(표 II-10 참조)되어 있음

표 II-9 전국이주여성쉼터 운영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18	2	2	1	1	1	1	1	2	1	1	1	1	1	1	1	1
입소정원	221	24	15	15	11	14	15	13	21	10	15	11	12	10	13	10	12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표 II-10 서울시 이주여성쉼터 운영현황

구분	시설명	운영주체	입소정원(명)	입소기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여성가족부+서울시 지원)	서울이주여성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2	2년
	벗들의 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12	2년

- 이주여성쉼터의 경우 최대 입주기간은 2년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주여성쉼터는 그룹홈 형태의 소규모 시설로 수용 인원이 작아 입소 희망자가 항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폭력피해가 아닌 이주여성이 보호가 필요해 입소하게 되면 쉼터 정원이 차게 되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입주를 하기 어려움
-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현황
 -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활 그룹홈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의미함.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는 1곳, 서울시 지원과 민간지원을 모두 받는 1곳을 포함 총 2곳이 있음¹²⁾

표 II-11 서울시 이주여성그룹홈 운영현황

구분	시설명	운영주체	입소정원(명)	입소기간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 그룹홈 (서울시 지원)	시립마리공동체	(사)참여성노동복지터 ¹³⁾	10	2년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민간+서울시 지원)	행복이주여성쉼터	(재)서비스포피스	13	2년

- 폭력피해여성 자활 그룹홈의 경우에도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폭력피해가 아닌 이주여성은 입소자체가 어려움. 또한 서울시의 지원예산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서울이주여성디딤터

- 개요
 -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는 가정폭력 등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제공, 아동보호, 직업훈련 등 자활 지원이 목적임. 2010년 10월 서울이주여성자활센터를 처음 개소하였고 이후 서울이주여성디딤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12) 미인가 시설 제외
13) 2012년 11월부터 바뀜

- 같은 해 11월 이주여성과 자녀가 첫 입소(베트남)하여 2012년 3월 거주자였던 이주여성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으로 첫 취업을 하였음. 이어 6월에는 두 명의 이주여성이 취업을 하는 등 7월 현재까지 3가족 6명의 거주자 첫 퇴소 및 자립이 이루어짐

- 최대 2년 동안 머물 수 있음

○ 주요 지원 서비스

- 생활지원 서비스: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직업훈련 및 취업서비스: 이주여성 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및 외부전문교육훈련기관 연계 등
- 교육 서비스: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 사회정착을 위한 생활문화 교육 등(표 II-12 참조)
- 기타 서비스: 취·창업 후 사후관리, 동반아동의 육아 및 보육지원

○ 운영현황('12년) : 서울 1개소 운영



자료: 서울이주여성상담터(<http://cafe.daum.net/joyfull2070/>) 홈페이지

■ 그림 II-11 ■ 서울이주여성상담터 전경

표 II-12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설교육명	주요내용
바리스타 양성교육	커피 이론교육 및 실습,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대비
제과제빵교육	제과제빵 기초교육 및 자격증 취득 대비
봉제교육	재봉틀 기초교육 및 생활소품 제작 교육
한식/양식 교육	한식/양식 조리교육 및 자격증 취득 대비
한국어교육	수준별·단계별 한국어 교육
정보화교육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교육
한국문화 체험 및 교육	한국문화 체험 교육 및 자국문화 알기
생활교육	생활에 필요한 지식·정보 제공 및 경제교육·부모교육
심리정서 지원	심리검사/상담 및 미술치료
직업지도	적성검사와 직업 탐색
자기성장교육	이미지메이킹, 화장법, 옷차림 교육,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 훈련
행복장터	직접 제작한 물품 및 각국의 음식 판매, 재활용품 판매
OJT(On the Job Training)	현장 파견 실습
동반자녀 프로그램	보육 프로그램, 단계별 아동발달검사 및 교육, 상호작용을 위한 언어지도, 심리검사 및 치료, 모-자 애착 프로그램, 엄마나라 언어교육
자립·자활 및 사후관리	취·창업 및 거주지 연계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입소 대상은 컴퓨터에서 이혼 및 체류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한국에서 자립하여 생활하고자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자녀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장기간 입소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서울이주여성디딤터도 이혼 후 자활의지가 있으나 불법체류자가 된 이주여성, 또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임시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은 사실상 입소가 불가능함
-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활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귀환한 이주여성도 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기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제 3 절 이주여성 관련 법제 및 정책 현황

1. 이주여성 관련 법제

- 이 장에서는 이주여성 관련 법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주여성에 대한 일시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현 법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제도적인 틀 마련이 필요하여 2008년 9월에 제정됨. 최근 2011년 4월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을 구체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개정·신설됨
- “다문화가족”(제2조)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함. 그러나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등에 의해 입국한 이주민들 사이에 다문화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을 형성했다라도 별거 또는 가출로 인해 불법체류 이주여성이 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한국인 배우자+이주민 다문화가족에서 미등록된 이주민+이주민 다문화가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으로 대상을 한정짓기 보다는 미등록 이주여성까지 점차 보호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제 8조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구체화 하고자 2011년 4월 개정 및 법 조항이 신설됨. 주요내용은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대, 이혼소송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제 8조는 지원 대상을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이주여성의 경우 도움을 받지 못함

- 제 12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 및 상담, 한국어교육, 다문화 가족 관련 서비스 제공, 다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통번역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하지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통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가정폭력 및 가족 갈등에 따른 이혼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안정을 위한 사업만으로는 다문화 가족 및 이주여성의 문제해결과 인권보호에 한계가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울에 1곳이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달리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직접 다문화 가족 및 이주여성의 문제에 개입하기가 용이함.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여성으로 그 대상을 넓혀 이주여성에 대한 심층적인 지원 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위기 시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난민 등으로 체류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정착 지원을 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2007년 5월에 제정됨. 최근 2012년 2월 10일 제 14조 난민의 처우 조항이 개정되었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법의 적용대상을 합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재한 외국인 사회적 적응 지원(제11조)의 경우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처우(제1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제11조와 제12조는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지원은 있어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명시하지 않음. 즉 이주여성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만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지원은 명시하

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한 전체 이주여성의 체류유형에 따른 처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는 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결혼이주여성의 폭력 피해로 한정한다고 볼 수 있음

- 2012년 2월 10에 개정된 난민의 처우(제14조)는 「국적법」에 따라 규정되던 난민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 중 난민에 대한 범위와 처우를 명확히 하였음. 특히 난민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하고,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 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및 지원을 명기하고 있음. 이와 연계하여 난민뿐만 아니라 점차 늘어나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본국으로 가고자 한다면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출국정보제공, 관련 상담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적법

- 국적법의 제6조 간이귀화 요건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이 불가능 했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국적법」에서 간이귀화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의 간이귀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음.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므로 이주여성이 부부갈등으로 가출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이혼하고 싶어도 부부관계에 종속되는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이주여성이 이혼을 해도 출입국관리국의 담당자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른 관행에 의해 합법체류가 가능함에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간이귀화신청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 국내거주기간(원칙적으로 2년)이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종속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장명선, 2009)
- 2012년 이주민의 귀화신청 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제가 폐지되었으나 혼인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동행 또는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이주여성은 여전히 배우자와 가족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22조 차별의 금지 조항을 살펴본 결과, 차별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 즉 사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주민 또는 이주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차별, 일상차별 등에 대한 규정 및 범위가 명시되지 않음.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함.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을 정의하여 이에 대한 처벌 및 지원을 법에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주 근로자가 당하는 차별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가 좀 더 명확해진다면 그에 따른 처벌 및 지원 사업의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음

□ 서울특별시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

- 서울시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는 2009년 5월 28일에 제정되었음.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 예산지원의 근거 명시, 사업과 관련된 우수단체 및 공무원 표창에 따른 사항임
- 다문화가족(제2조)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미등록이주민 다문화 가족의 이주여성,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기 어려움
-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제4조)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사업,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호 및 교육 사업,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 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유지’에 집중하고 있고, 이혼 및 이혼에 따른 이주여성의 귀환 등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대한 지원이 없어 결혼이주여성이 귀국하게 될 경우 이

주여성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이 부재함

-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만 한정되어 있어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인권지원 조례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가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보호 및 지원 포괄하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음

2. 이주여성 관련 정책 현황

□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2012년 1월 여성가족부는 제2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함
- 제2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 중심의 한국문화 적응 중점 지원 및 시혜적 지원에서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상대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가족문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제2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6대 86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다음의 **■ 그림 II-12 ■**와 같음

비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정책 과제 (86)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7)	1-1.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2. 한국어능력 향상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6)	3-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3-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3. 소외계층 지원 강화 3-4.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4.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21)	5-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11)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6-3.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자료: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그림 II-12 ■ 제2차 다문화 가족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다문화 가족의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다루고 있음.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와 이주여성이라는 틀에서 여전히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이주민 다문화가족, 사실혼 이주여성, 또는 이혼 뒤 다시 재혼한 이주여성에 관점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과 관련된 세부과제는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중 ‘3-4. 피해자 보호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

3-4. 피해자 보호

-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내실 있는 운영 및 상담언어 서비스 단계적 확대
 - 상담원 역량 강화를 통해 상담의 질 제고(년 2회)
 - 야간상담 언어 확대를 통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 ※ '12년: 10개 국어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보호, 상담·의료·법률·출국 등 지원, 치료회복 등을 통한 인권보호를 위해 이주여성쉼터 단계적 확대
 - ('12) 시·도별 1개소씩(서울, 경기 각 2개소) 18개소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거주와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을 위한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내실화(여가부)
 -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1개소), 이주여성 그룹홈(1개소)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과 관련된 피해자 보호 정책과제를 살펴본 결과 주요내용은 상담원의 질 제고, 상담-의료-법률-출국-치료 회복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 이주여성쉼터 단계적 확대, 자립지원을 위한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내실화를 해결과제로 도출하고 있음
- 그러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이주여성은 보호 및 자활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본국으로 귀환을 원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제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 제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로 성별격차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로 지향하고 있음. 이 중 핵심과제로 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②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③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④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⑥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⑦ 성평등 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이주여성에 관한 부분은 ③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목표의 세부과제로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를 제시함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이주여성 정책이 이주여성이 한국사회로 이주한 후 복지 및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국제사회와 공조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함. 따라서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이주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

-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지원 강화, E-6 사증 여성노동자 보호 강화 및 존속 여부 재검토 등이 주요 내용임
-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이주여성 인권보호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국제결혼 국가와의 연계, 가정폭력 인정범위의 확대, 폭력피해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및 관련 기관의 확충, E-6 연예인 흥행 비자로 입국하는 여성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음.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범위를 이주여성의 이주 전후과정에서부터 한국정착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인권보호 범위를 이주여성의 귀환까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 확충에 있어서 이를 폭력피해이주여성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주여성의 위기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상담소, 자립시설,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함

□ 서울시 다문화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多)행복 서울플랜”

- 2012년 8월 22일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행복 서울플랜”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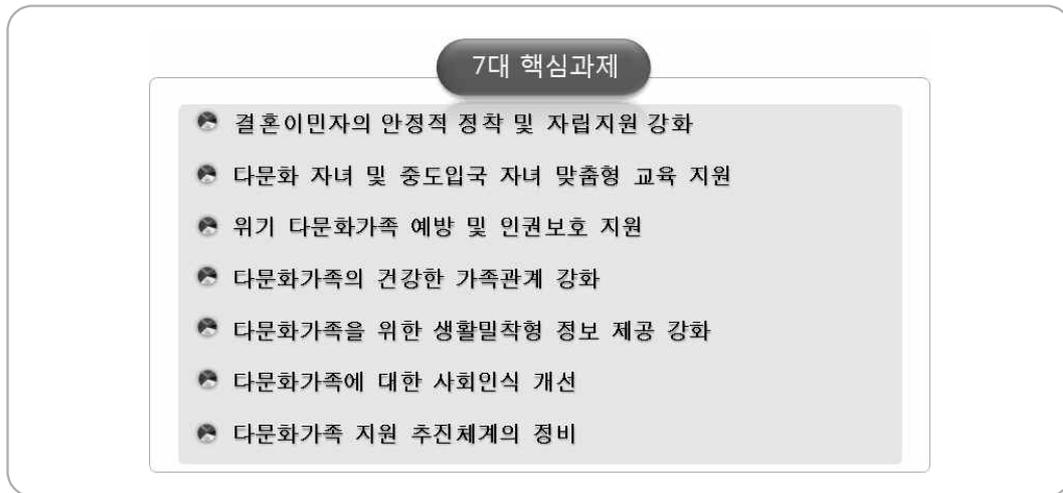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 “다(多)행복 서울 플랜” 기본계획

■ 그림 II-13 ■ 서울시 “다(多)행복 서울 플랜”의 정책비전과 목표

○ 7대 핵심과제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위기의 다문화 가족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음

- 부부, 자녀, 가족갈등 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전문적 상담 거점 확보
- 피해여성 및 동반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 다문화가족 종합지원 실시
- 가정 내 폭력근절을 위한 사전예방교육 강화



자료: 서울시 “다(多)행복 서울 플랜” 기본계획

■ 그림 II-14 ■ 서울시 “다(多)행복 서울 플랜”의 7대 핵심과제

○ 핵심과제 중 세부사업인 “종합상담기관 “다(多)행복 상담센터(가칭) 설치·운영”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결혼이민자 긴급보호, 개인상담, 가족상담 등 전문종합서비스 지원으로 세부과제 목표는 단기간 일시보호, 긴급 대피처 제공하여 필요시 기존 보호시설(쉼터, 그룹홈)의 유희공간 추가 확보 (전액 시비지원)였음
- One-Stop 서비스 : 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담부터 피해 사례 관리까지 실시(언어, 법률지원 등), 접근성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 실시
- 개인상담 : 심리검사, 언어·문화적 고충·사회생활 문제 등 상담(방문, 전화, 온라인)
- 가족상담 : 부부관계, 자녀,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 대상 상담
-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추진방법

- 서울시 : 장소 제공 및 운영비 지원
- 민간단체 : 프로그램 개발, 상담실시, 서비스 제공 등 센터 운영

- 다행복 상담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의하면 서울시는 상담소-관련 전문기관-임시 보호연계를 구축하는 종합서비스 지원을 지향하고 있음. 특히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결혼 이주여성을 상담소, 폭력쉼터 등과 연계하는 종합지원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행복 플랜은 이주여성에 대한 임시보호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임시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의 범위를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 합법체류 이주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음. 합법체류 결혼이주여성이라도 가정폭력과 부부갈등의 경계에서 이혼이나 가출을 하게 될 때, 귀책사유가 명확치 않아 불법체류 이주여성으로 전락할 수 있음. 이에 임시보호는 긴급 상황 시 이주여성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부분의 이주여성이 한국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주여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함

□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주요내용

- 한국에 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체류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가장 부각된 집단이었음. 2013년 1월 14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자의 체류비자제도 및 연장제도는 이주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많이 개선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개선만으로는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존재함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있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함. 또한 귀책사유가 결혼이주여성에 있더라도 내국인 배우자의 가족 및 아이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체류가 가능함
- 별거, 이혼 소송 과정, 내국인 배우자의 실종 신고 전 과정 속에서도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혼하여 아이를 부양하는(F-6-2) 경우 체류기간연장은 최초 1년, 이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 이혼을 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졌을 때 1년 범위 내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라도 자녀와 왕래가 없을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가사정리비자는 내국인 배우자가 사별하거나 실종신고 되었을 때 발급되는 비자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6개월~1년 이내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내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출, 가정폭력 등)를 입증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합법적으로 가능함. 또한 이혼하더라도 내국인 배우자의 부모,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체류연장이 가능함

- 체류제도의 개선과 달리 실제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 등록에서 부터 초청, 체류연장, 영주권, 귀화의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진정한 혼인관계임을 증명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2012년 8월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을 폐지함.¹⁴⁾ 대신 결혼이민자가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혼인의 진정성 여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어 귀화허가 신청 시 배우자 동반하거나 또는 부부 간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¹⁵⁾
- 이주여성은 배우자가 반대해도 귀화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후 혼인관계 진실성 조사에서 배우자 및 주변 가족의 진술 등이 귀화허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 시 배우자 가족이 체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체류가 어렵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문제는 여전히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 또한 2년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귀화신청은 여전히 이주여성들을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는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음
- 이주여성의 경우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배우자 및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이 경우 이주여성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거나 상대배우자가 고소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하였더라도 이혼 시 면접교섭권 없을 때, 면접교섭권이 있더라도 자녀와의 만남을 상대배우자가 방해할 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움
- 게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담당자의 제도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배우자 동반을 의무화하여 귀화신청을 거절하는 사례 등은 제도개선과 함께 행정담당자의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도 같이 개선해야함

14) 결혼이민(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대한민국에서 2년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자

15) 2012. 7. 5.자 동아일보(12면) “경찰이 방법창 뜯는 새 조선족 아내 비명” 제하 중국인(조선족) 여성 사망사건 보도 내용에 대한 법무부 해명자료.

□ 이주근로자 귀국 프로그램 현황

- 2003년 외국인 고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주 근로자 고용허가제(EPS:employment permit system)가 본격적으로 도입됨
- 2004년 외노협 13개 단체와 한국IOM, 인하대학교 등을 참여단체로 하는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컨소시엄- Consortium For Migrants ‘Voluntary Return & Reintegration Programme(CMVRRP)’이 구성되었음(최희숙, 2008). 2004년 컨소시엄 결성은 2005년 귀환 및 재통합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본국귀환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2006년에는 인력 송출국가와 연계하여 이주근로자의 출국 및 귀국 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성과를 가져옴
-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 근로자 귀환 프로그램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역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각지방자치단체(경기도 제2청, 안산시, 인천시 등) 많은 및 외국인주민센터, 관련 NGO 등에서 실시되고 있음(권영길 외, 2008)
-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환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동체/의식교육: 귀국준비교육, 저축장려교육, 본국귀환 시 재통합을 위한 가족 의식 교육 등
 - 기능교육: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무역/실무 및 창업마케팅, 이미용교육, 미디어교육, 자동차정비교육, 사진촬영교육 등(최희숙, 2008)
 -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의 귀환교육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았음

표 II-14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2012년 귀환교육 프로그램

전략목표	세부사업
한국생활 적응 교육 및 성공적 귀환교육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토력교육
	정보화교육
	법률 교육
	귀국준비교육
	직원상담 교육

- 이주 근로자의 귀환 프로그램은 이주근로자의 자발적 귀환의지를 높이고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 근로자만 주요 교육대상이 되고 있고 이주여성근로자의 욕구를 파악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이 거의 없음. 또한 실제 본국 귀환 시 도움이 될 만한 기능교육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귀환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저축 장려 및 지역사회 통합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주요내용은 저축 장려, 유흥산업에 대한 경계, 본국에서의 창업 및 경제유지 등 경제의식교육, 본국 가족과의 재통합 교육,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는 교육 등 임(최희숙, 2008).
- 현재 이주 근로자 귀환 프로그램을 이주여성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움. 기능교육의 경우 이주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미용 교육이 유일함. 또한 이주여성근로자 및 이혼한 이주여성이 본국으로 귀환 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본국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재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내용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됨
- 이주여성근로자는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하여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사례가 많았음. 따라서 본국에서의 자립기반이 없는 경우 다른 나라로 다시 이주하여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 악순환 사례가 있었음.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에 실패하여 귀환하는 경우에 이혼에 대한 주변의 편견 때문에 본국에서 재통합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었음(한국염, 2011)
- 귀환여성이 귀환하여 본국 사회에서 재통합되기 위해서는 국내 단체들의 인도적인 귀환 프로그램 제공 및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또한 해당국가의 NGO, 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재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함

제 4 절 시사점

- 이주여성 관련 통계를 파악한 결과, 국내 체류현황에 따른 성별 통계는 있으나 이주여성이 체류사례별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여성의 유형별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인도주의적인 본국 귀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귀환 경로 추적 및 실태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이주여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이주여성은 각각의 체류현황에 따라 다양한 인권침해 및 피해를 당하고 있었음. 그러나 사안의 경중 및 위기상황, 폭력피해의 경중에 따른 지원 세분화, 개인별로 다른 문제해결기간 및 보는 기간, 한국 정착 또는 본국 귀환 선택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분화 등 다각적 차원에서의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통계 분석 결과, 상담을 요청하는 이주여성 중 결혼이주여성이 많고 대부분 결혼 및 부부갈등, 이혼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가족, 심리상담 등을 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주여성의 생활상담 및 기타상담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점차 다양해짐을 알 수 있음.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 및 시설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내 거주 이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 외 위기상황에 처해 일시보호를 요청하는 이주여성, 해고 시 거주지가 없는 이주여성근로자 등 폭력피해로 보기 어려운 여성들이 위기상황으로 인해 시설에 입주하는 사례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예산부족 및 운영상의 문제로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현재 이주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원범위를 폭력피해 이주여성에서 전체 이주여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주여성이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주여성 관련 법제 및 정책을 살펴본 결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주로 다문화가족안정 및 사회통합,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이전과 달리 이주여성 체류제도도 점차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었음.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와 이주여성을 전제로 하여 지원하는 법제 및 정책지원, 체류에 대한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 체류 정



- 보획특의 제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이주여성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음
- 이주여성에 대해 상담-의료-법률-정착 또는 출국-치료회복 등의 종합지원 연계 서비스 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임
 - 일시보호시설의 필요성 측면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위기상황을 세분화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맞는 새로운 정책적 시각 및 지원이 필요함
 - 이주여성 인권보호 정책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일시보호시설의 지원 대상은 기존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지원받기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을 통해 일시위기상황에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숙식 제공 및 보호, 교육을 제공하여 이주여성의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체류상황에 따라 국내 정착 또는 귀환을 지원하여 이주여성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기존의 이주여성 지원은 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한국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음. 그러나 모든 이주여성이 폭력 피해자는 아니며 또한 모든 이주여성이 결혼이주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주여성 정책의 보호체계에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여성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이 또한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정책이라 볼 수 있음
 - 이주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피해자 인권보호 인식에서 한국사회에 있는 이주여성은 누구나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인식으로 확대전환 해야 설치가 가능함. 따라서 한국 인권정책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의의가 있음

III

이주여성 전문가 조사 결과 및 분석

제1절 전문가 조사개요

제2절 전문가 전문가 조사결과 및 분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이주여성 전문가 조사 결과 및 분석

제 1 절 전문가 조사개요

- 이 장은 일시보호시설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도출을 하고자 실시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및 분석하였음
- 본 연구의 전문가회의는 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관계자,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소장, 이주여성상담소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담당자, 이주여성 인권보장을 위한 NGO 자원 활동가, 이주여성 관련 연구자 등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됨
- 연구초기에는 일시보호시설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을 섭외하고자 하였으나,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밝히길 꺼려하고 연구기간이 촉박하여 기간 내 이주여성들을 심층면접하기 어려웠음. 결국 이주여성 및 가족을 질적 연구로 조사한 연구자를 섭외하여 일시보호시설이 필요한 이주여성의 현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음
- 전문가 자문회의는 2012년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3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본 전문가 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III-1**과 같음
 - 전문가 조사 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연구자 D가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연구자문 및 전문가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연구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였음



【표 III-1】 전문가 조사 개요

자문회의 일시	구분	소속
2012. 12. 1(토)	A	00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B	이주여성 관련 NGO 대표
	C	이주여성 관련 상담소장
	D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연구자 1
2012. 12. 13(목)	E	이주여성 쉼터 대표자
	F	00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팀장
	D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연구자1
2012. 12. 28(금)	G	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종사자
	H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연구자 2
	D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연구자1

○ 주요 조사 내용은 일시보호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예상수요 파악, 기존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운영현황 파악, 일시보호시설의 이용범위 및 운영방법 등으로 이를 통해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도출함

【표 III-2】 전문가 조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설치 필요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의 예상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현황 파악 • 일시보호시설이 필요한 이주여성 유형
이주여성 쉼터 및 관련 기관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제공 서비스 • 기관 운영 중 애로사항 • 기존 시설과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비교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운영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이용범위 및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기간과 제공 서비스 • 담당역할(기능), 운영주체 등 이주여성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방안 모색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외에 이주여성 관련 서비스 지원정책 개발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검토

제 2 절 이주여성 전문가 조사결과 및 분석

- 이 장에서는 일시보호시설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도출의 측면에서 자문회의에 참석한 현장전문가 및 연구자의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함

1.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

-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모두 이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이주여성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성매매 이주여성 등 체류현황에 따라 각 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는 이주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기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절대적 부족

- 현재 이주여성들이 입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 자활지원센터(서울이주여성디딤터), 그룹홈 등이 있음. 그러나 대상자가 폭력피해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입주가 어렵고, 최대 입주기간은 2년으로 1~3개월 정도 머물 수 있는 단기간 보호시설은 없는 실정임
- 이주여성들이 위급 시 가장 먼저 연락하게 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경우 내 단기 피난처가 있으나 운영규정상 24시간 이상(최대 48시간) 머물기 어려움. 1~2일 정도만 이용하는 규칙이 있는 이유는 장소의 협소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 있는 이주여성이 언제든지 필요시 들어오게 하기 위함. 따라서 이주여성들은 긴급지원센터의 피난처 이용 뒤 48시간 이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퇴소 후 갈 곳을 모색해야함. 또한 긴급피난처에서는 기본적인 숙박만 제공되고 식사 외 다른 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 이주여성쉼터의 경우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주요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쉼터로 오는 이주여성 중 일부는 가정폭력 외의 사유로 입주한 사례가 있었음. 일반적으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거쳐 주로 입주하게 되는데, 이주여성이 도움을 청하는 전화 등의 1차 상담에서 가정폭력을 바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긴급 상황으로 판단되어 쉼터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쉼터에서 실시한 2차 심층상담



결과 폭력피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음. 가정폭력 이외의 사유로 들어온 이주여성의 경우 문제해결이 되면 조기퇴소를 유도함. 그러나 이혼소송 및 부부갈등 등으로 인해 퇴소 시 갈 곳이 없어 위협에 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해결 시까지 쉼터에 머물게 하거나 상담자 및 현장 활동가가 자신의 집에서 재우게 되는 경우도 있었음

□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의 애로사항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입소자의 입소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정폭력이 사유가 아닌 이주여성이 입주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쉼터 입주 대기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음.¹⁶⁾ 입주 대기자가 늘어남에 따라 쉼터 거주기간이 최대 2년임에도 불구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도 문제해결이 되면 조기퇴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음
- 일부 이주여성은 긴급조정을 통한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국에서 서울에만 있는 것으로 당일로 판결문을 받음. 이 경우에도 수속과정이 약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도 이주여성들은 머물 곳이 없어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에 협의이혼 하는 이주여성들이 오는 사례가 있었음
 - 폭력피해가 아닌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하여 상담할 필요성이 있음

□ 이주여성 사례에 따른 보호시설 세분화의 필요성

- 이주여성은 국내에 있는 자국민 네트워크가 있지만 이는 일부 지역 및 국적의 이주여성 내에서만 활성화되어 있어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이주여성은 이혼, 폭력 등으로 인해 갑자기 거주지가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잠시 머물 곳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머물 곳이 있어도 1~3일 이상 머물기가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
- 이주여성근로자는 체류상황에 따라 일시적 보호가 필요함. 예를 들어 고용주와의 갈등, 부당한 대우, 해고,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들은 숙식을 제공하던 전 직장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처에서 나와야 함. 또

16) 가정폭력 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에서도 10세 이상의 남아 동반 이주여성폭력피해자 또는 아이가 여러 명인 이주여성폭력피해자의 경우도 입소하기 어려움

한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함. 또한 이주여성근로자 문제는 현재 다루는 이주여성상담소가 많지 않아 오히려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음

- 이혼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체류자격 연장에 대한 정보 부재 및 내국인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체류할 수 없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이라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혼 소송중이거나 혼인생활 중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집을 나왔을 때 합법적인 체류정보 제공 및 이혼소송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사유만으로 이혼하지 않음.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소송 기간 동안 도움을 받으며 머물 곳이 필요함. 또한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한 이주여성의 경우 숙려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동안 같이 사는 게 무의미한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숙려기간에 있는 대다수 이주여성은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꺼리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할 필요가 있음
-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이혼한 이주여성들은 한국 내 거처가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머물 곳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체류기간 만료 전까지 일을 하여 본국의 가족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욕구가 있었음
 - 이혼소송이 마무리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체류문제가 잘 해결되어 한국에 남게 되어도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양육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필요함. 일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경우 쉼터에서 직장을 다니지 못할 때는 3개월 이내에 퇴소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장명선, 2009)
 - 한국에 있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 중 일부는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브로커를 통해 미등록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고용주나 브로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이 경우 귀국을 전제로 하는 일시보호시설이 있다면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이주여성의 본국귀국을 유도할 수 있음
-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서울의 보호시설 입소를 선호함. 그 이유는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쉼터시설은 지역의 협소함으로 인해 남편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고, 수도권이 일자리 및 정착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임

- E-6 연예홍행 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 및 성매매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음. 또한 유학생으로 입국했거나 결혼이주여성이라 할지라도 성매매에 유입되는 사례도 있음. 그러나 유입되기 전 탈성매매를 하는 경우 또는 유입되었다가도 탈출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법적인 절차를 정리할 수 있도록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이 없었음. 또한 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같이 있게 되는 경우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하였음. 이주여성 쉼터나 기관이 이주여성근로자,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쉼터가 소규모이고, 입소자의 입소사유에 따른 위화감 조성 문제로 인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이 입소하는 실정임

2. 일시보호시설에서 지원해야 할 서비스

□ 상담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 상담은 내국인 여성 상담과 달리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파악하기 어렵거나 은폐될 수 있는 이주여성의 위기상황을 심층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 특성이 있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조차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접근하지 않는 경우 이주여성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전문상담기능은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필수로 갖춰야할 기능임
- 일시보호시설은 이주여성상담소가 운영하는 부설 시설로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전문가 및 예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주여성 상담소와 일시보호시설을 결합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음. 따라서 기존 이주여성 전문상담기관이 일시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일시보호시설과 상담소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임
- 일시보호시설은 보호시설별로 이주여성이 입주할 수 있도록 1차, 2차 상담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 1차 상담에서는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심층적으로 알기 어려움. 따라서 1차에서는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상담을 주로 실시하여 일시보호시설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시보호시설에 입주하도록 함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이주여성관련 상담기관에서 1차 상담 뒤 일시보호시설에 입주 후 심리 및 치료

등을 진행하는 2차 상담을 진행하여, 상담 후 이주여성의 문제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보호시설의 퇴소 및 귀가, 일시보호시설에서 문제해결 뒤 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연계, 이주여성자활센터 연계, 그룹홈 연계 등 통합 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통역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언어가 다른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통역기능이 필수임
- 이주여성 상담소의 경우 언어별(국가별)로 이주여성의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문통역 수급에 어려움이 많음. 예를 들어 중국과 베트남은 수요도 많고, 통역 인력이 많지만 그 외의 국가는 통역 인력이 많지 않음
- 이주여성 긴급지원의 경우 24시간 내내 어느 국적의 이주여성이 언제 도움을 청할지 몰라 항상 통역 인력이 대기하고 있어야 함. 그러나 숙련된 통역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24시간 내내 대기하기 어려움. 이에 이주 관련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통역 인력을 연계하여 이주여성의 국적별로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또한 이주여성 상담소 및 센터에 있는 대부분의 통역 인력은 기관의 처우가 열악해 경력을 쌓으면 그만두고 대우가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이주여성 상담소 및 센터, 보호시설의 통역요원이 전문성을 살리고 안정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금 및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함

□ 법률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의 경우 체불임금, 부당한 대우 및 차별 등을 당할 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나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이주여성상담소의 사정으로 인해 오히려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가 이주여성근로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음
-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소송은 진술서 작성부터 증거확보, 번역과 통역, 법정 출석, 관련서류 제출 등 부터 양육권, 면접권, 이혼 판결 후 귀환 또는 국내 합법체류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률 서비스는 통역, 법률정보, 절차 시 동행, 체류연장, 귀환 전까지 법적 절차 마무리 등 고려한 종합법률 지원 상담이 제공되어야함



-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자칫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이혼 소송을 무사히 마무리 지은 다음 인도주의적 본국 귀환을 유도하고, 귀환 시 본국에서 사회재통합을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함

□ 자립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들은 국내에 체류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모두 돈을 벌어 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이혼소송이 마무리되고 체류문제가 해결되어 한국에 남게 되는 경우 자립문제가 중요시 됨. 만약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단기 직업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단순 노무직이 종사하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또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에도 본국에서 자립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다시 다른 국가로 가서 이주노동을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거나 본국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재통합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일시보호시설이라도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입소한 이주여성이 직업훈련 및 교육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여성인력 개발기관 등을 활용하여 단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의료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경우 야간에 또는 급박한 상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해야함
- 쉼터에 임신 등으로 오는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도 모성보호시설 또는 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함
-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머물기 어려울 수 있어 심리상담외에도 정신과상담 및 치료가 필요함

□ 일시보호시설과 통합 지원 서비스 연계

- 이주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은 폭력피해 외에 다양한 위기상황에 있는 이주여성을 보호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 보호 지원체계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플랫폼(platform)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폭력피해로 보기 어려우나 위기상황에 있는 이주여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2차 심층상담을 통해 이주여성의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문제해결이 필요함. 즉 귀가, 퇴소,

- 상담소 연계, 보호기관 연계, 체류연장, 귀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이 이주여성 문제해결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각 자치구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 디딤터, 이주여성 관련 NGO, 경찰, 법원, 병원, 구청, 출입국관리국 등과의 종합적 연계 및 지원이 필요함
 - 서울시가 이주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서울시 각 자치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와도 연계가 활성화되어 이주여성 인권보호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 자치구별로 설치되어 있어 지역사회 이주여성들과 직접 대면하여 상담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음. 따라서 일시보호시설과 자치구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서울시 각 자치구가 연계하는 이주여성 인권보호 통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IV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운영방안

제1절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지원 정책의 지향점

제2절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운영방안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운영방안

제 1 절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지원 정책의 지향점

-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주여성의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도 다양해지고 있음. 이주여성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성매매이주여성 등 그 동안 분류해왔던 유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주여성은 노동, 가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차별, 가부장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음
-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차별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주여성 인권보호 정책은 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지원 및 시설 운영을 해왔으며,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및 시설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폭력피해 사유가 아님에도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 사례는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상담시설 및 보호시설은 부재함. 따라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서 나아가 이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함
- 일시보호시설은 이주여성인권 보호 지원체계에서 일종의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입주대상은 합법체류 이주여성으로 규정하나, 불법체류 이주여성도 시설 퇴소 시 본국 귀국을 전제로 입주하도록 하여 불법체류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주여성의 본국 귀환도 인도주의적 귀환이 되도록 함. 또한 최대 3개월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위기상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일시보호시설은 이주여성에 있어서 상담기능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이주여성 상담소 부설 일시보호시설 복합 형태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보호시설이 되

어야 하며, 상담소 부설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의 이주여성 상담소와 적극적 연계해야 함. 또한 그 규모는 관리의 차원에서 소규모 그룹홈을 원칙으로 함

- 일시보호시설은 일시보호 - 통역 - 전문상담 - 법률 - 의료 - 귀국까지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주여성상담소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쉼터, 디딤터, 기존 이주여성 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행정 및 서비스기관 등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사례별로 분류하고 이주여성 인권보호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제 2 절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운영방안

1. 시설유형과 이용대상

□ 일시보호시설의 유형

- 조사결과 일시보호시설은 이주여성상담소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이주여성보호시설은 전문 상담기능이 가장 중요함. 따라서 상담소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이주여성 상담소에서 부설로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임. 일시보호시설을 따로 설립할 경우 인근 지역의 이주여성상담소와 연계하는 운영방식을 추구해야함
 - 일시보호시설 규모는 소규모 그룹홈이 바람직함. 수용의 편의로 인해 대규모의 연수시설을 사용할 경우 이주여성 및 외부인 출입의 통제가 어려움. 또한 이주여성의 국적별 문화차이 등으로 인한 식사 및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무단이탈할 확률이 높음. 따라서 입주자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활인의 통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그룹홈 형태가 가장 바람직함. 예를 들어 SH공사는 성폭력 피해자 그룹홈에 다가구 매입주택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이용대상

- 전제: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퇴소 시 본국 귀국을 원칙으로 함. 단 합법적 체류연장 및 귀화한 이주여성의 경우 퇴소 시 본국 귀국을 원칙으로 하지 않음
- 대상: 상담 후 일시 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 가정폭력 외 일시 보호가 필요한 결혼 이주여성, 이혼 소송 중인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성매매 여성, 불법체류자 여성 등
- 입주과정: 첫 번째 안은 일단 도움을 요청한 이주여성은 모두 수용하여 상담자가 2차 상담을 하여 폭력피해여성으로 파악되는 경우 이주여성 쉼터나 이주여성 디딤터로 연계함. 두 번째 안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상담센터 등 이주여성 상담 관련 기관에서 1차 상담을 통해 일시보호시설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으로 판단될 경우 일시보호 시설로 연계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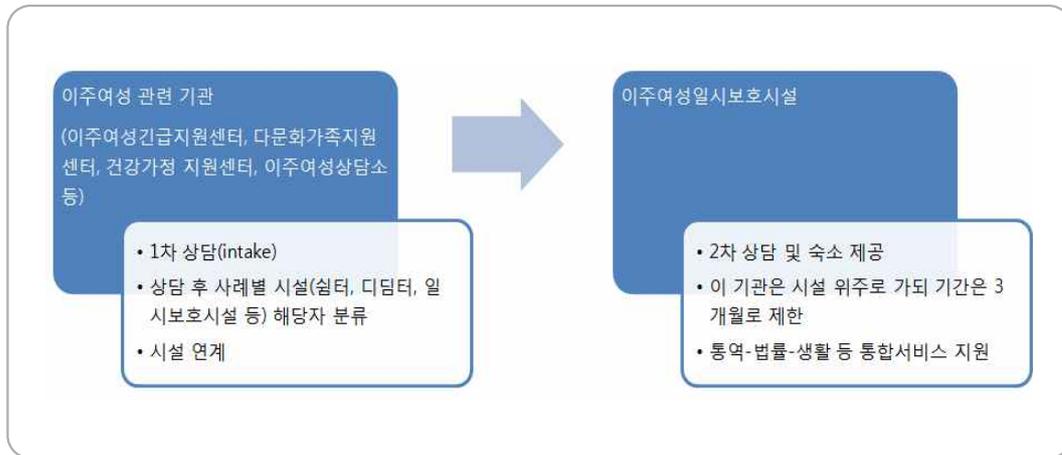
□ 이용 기간

- 사유와 상관없이 최대 1주일을 머물게 하고, 상담 후 입소기간 연장 또는 퇴소, 다른 쉼터나 기관 연계를 결정함
- 상담 후 머물더라도 이용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함

2. 주요 기능과 지원서비스

□ 지원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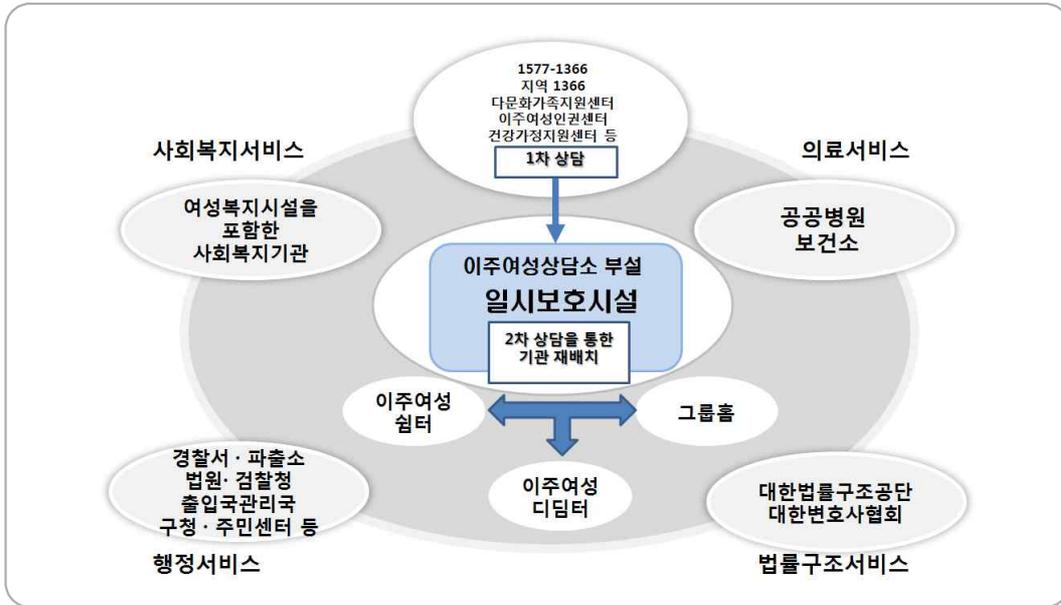
- 통역 지원, 심리 및 가족상담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통합한 형태인 통합적 지원 형태
 -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인력과 장소(시설), 운영경비가 늘어남
 - 일시보호시설이 생활만 가능한 시설일 경우 이주여성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그림 IV-1】 이주여성 관련 기관과 이주여성일시보호시설 연계방안

□ 지원 서비스 내용

- 생활 서비스: 외부인 출입 통제, 식사 및 숙소 제공
- 통역 서비스: 수요가 많은 통역서비스(중국, 베트남 등) 위주로 제공하되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 상담 서비스: 체류 등 정보 상담, 생활상담, 심리치료 상담, 부부상담 등 분야별 상담 제공, 정신이상 시 의료서비스와 연계, 향후 이주여성을 기본 상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법률 서비스: 이혼, 체류, 임금체불 소송 등 이주여성 관련 법률 상담, 소송, 진행, 행정절차 지원
- 의료 서비스: 긴급한 경우 의료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근병원 연계
- 자립 서비스: 자립육구를 지원할 수 있는 단기직업훈련 및 직업상담 서비스
- 모성보호 서비스: 임신 및 아이동반 입소 시 의료 및 보육시설 및 서비스 지원
- 취업상담서비스: 체류비자 만료 전까지 단기 취업 상담 및 본국 귀환 시 출신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상담 제공 및 해당국가 관련 기관과의 연계 필요
- 교육서비스: 이주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교육, 의식교육, 가족교육,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출국준비교육, 귀환 시 본국사회 재통합 교육 연계 등 다양한 교육제공
- 기타 서비스: 출국 시 출국지원서비스, 기타 이주여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



■ 그림 IV-2 ■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통합 지원 체계

3.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운영방안

□ 시설 설치

- 상담소 부설 또는 연계: 상담소 인근 일시보호 그룹홈을 설치함. 상황 상 독립시설로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이주여성 상담소 등과 연계가 필수임
- 숙소 설치 : 기본적으로 숙식 및 취사시설 제공
- 모성보호시설 설치 : 자녀 동반 이주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방의 배치 및 설치
- 기타 시설설치: 부엌시설, 샤워시설, 상담실, 24시간 숙직실 등

□ 이주여성 시설이용단계별 운영원칙

- 입소 전
 - 생활규칙 엄수 서약 받음(3회 이상 어길 경우 퇴소조치)
 - 입소 후 퇴소예정기간, 필요 상담 파악 및 공동생활 준수서약
- 입소생활
 -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 출입통제

- 식사시간, 취침시간, 외출시간 등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규칙 엄수,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고지를 원칙으로 함
- 직업훈련 등 참여 프로그램은 본인의 의사에 맡기도록 하고 그 외에는 자유 시간을 주어 본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퇴소

- 장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이주여성 보호기관(폭력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 디딤터, 그룹홈 등) 연계

○ 퇴소 후

- 비자가 만료된 이주여성의 경우 퇴소 시 귀국을 원칙으로 함
- 국내 체류 및 귀화가 가능한 경우
- 퇴소 후 국내에 머물게 되는 경우 최초 1개월은 사후사례 관리

○ 시설 위치 노출 여부

- 보호시설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허가된 외부인 외에는 보호시설 입출입 통제
- 단 상담소의 경우 남편이 참여하는 부부 상담을 할 수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공개도 가능

□ 일시보호시설 인력 운영안

○ 통역인력 및 운영

- 통역인력은 낮에 풀타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 주요국가 언어의 통역원 최소 3-4명이 필요
- 그 외 국가는 1577-1366 긴급 통역서비스 연계

○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생활인)

- 낮과 밤에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이주여성의 시설규칙 준수 및 관리
- 밤에 입소하는 이주여성에 편의 제공
- 낮과 밤 교대인력 최소 2명 필요

○ 전문상담원(심층상담 담당)

- 부부상담, 가족상담, 생활상담, 기본 관련 법률 및 정보, 취업상담 등 제공
- 법률자문단과 상담자문단 최소 2개 운영
 - 전문적인 법률자문은 변호사 법률자문단 연계
 - 심리치로나 기타 치료 등의 3차 상담은 상담자문단 연계
- 전문상담원 최소 3명 필요

- 재정, 실적 정리, 사무 등
 - 행정사무만을 담당하는 행정지원 인력으로 최소 1명 이상 배정
- 일시보호시설 수용인원
 - 소규모 그룹홈 형태로 최대 5명까지 수용
 - 자녀 동반 입소의 경우에도 총원이 10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
 - 문제해결 뒤 조기퇴소를 유도하여 보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정책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담소 부설 일시보호시설 인력운영방안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IV-1】 일시보호시설 예상 인력운영(안)

구분	기능	최소인원	근무시간	업무내용	비고
상담소 (일시 보호시설 연계)	전문 상담원	3명	낮	전문상담원은 부부상담도 하고 기본적인 법률상담도 담당	- 부부·가족상담, 고충상담 - 기본적인 법률상담 - 담당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법률자문은 변호사 자문단의 도움을 연계하도록 하고, 심리치료나 기타 치료 등의 3차 상담은 상담 자문단에게 연계하도록 함. - 자문단은 법률자문단과 상담자문단 2개를 확보해야함.
	행정 지원 인력	1명	낮	재정, 실적 정리, 사무 등	
	통역	3-4명	낮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 주요 국가 통역	이외의 국가는 1577-1366 연계 이용
일시 보호시설	생활인	2명	24시간 혹은 야간 근무	시설 관리	비용제한 시 야간 근무자는 필수로 채용함

- 운영원칙은 생활규칙 엄수, 외부인의 출입통제, 입소 전 생활규칙 엄수 조약, 퇴소 시 귀국, 합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퇴소 후 1개월간 사후 관리하도록 함

□ 기타

- 일시보호시설 설치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예산확보와 계획을 세운 뒤 진행해야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음

- 운영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인력, 기능정립, 지원 서비스 등을 기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
- 시설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 시 기존 기관과 차별성이 없어 예산 낭비 등의 문제 발생 우려
- 통역인력풀(pool)의 효과적 관리 및 연계방안 모색
 - 수요가 많은 국가 외 다른 국가는 통역인력풀(pool)이 많지 않아 서울시 외국인 통역 통합적 연계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
 - 안정적 통번역 인프라 인력 운영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 통번역 지원료를 지원하거나 이주여성을 훈련시켜 통번역에 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남편 및 가족 등) 통역 지원
- 법원과의 연계방안
 - 서울가정법원과 연계가 되면 서울가정법원 내 상담실이나 전용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전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예산 및 비용 확보에 유리함
- 이주여성 대상 전문 가족상담사 양성
 -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 및 다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춘 이주여성 대상 전문 부부상담사 및 자녀교육상담 인력 양성이 필요
 -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필요
- 이주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전문시설 설치
 - 쉼터의 경우 임신하여 오는 여성들도 많은데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쉼터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경기도 용인에 수도권 이주여성의 임신 및 산후조리를 위한 곳이 1곳 있으나 부족함
 - 서울에도 임신 중인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함
 - 아이를 양육하는 이혼여성의 경우 아이를 세살까지 키우는데 도움을 주거나 장기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 이주여성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 현재 다문화 여성 관련 기관은 근로환경 및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하여 일정정도 경력을 쌓게 되면 이직률이 높음
 - 무료법률자문은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법률전담 변호사 인력양성 및 배정이 필요
 - 다문화 관련 기관 상담직원들을 위한 법률지식 정기적 교육 필요
- 이주여성 관련 기관과 공공기관들 간의 의사전달 통로(협의체) 신설

- 법원, 구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이주여성 관련 기관과 공식적인 의사전달 통로(협의체)를 마련하여 이주여성의 위기상황 해결에 필요한 증명서 신청 및 제출 시 행정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함

○ 실적 평가방법 개선 및 사례공유

- 이주여성 관련 기관들 간에 사례 연계 및 공유를 통한 기관 운영 및 교류 활성화 방안 필요
- 평가 시 사례 및 상담건수를 통한 양적 평가를 지양하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사례 해결 지표 개발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영길·이상훈·이종용(2008), 「외국인근로자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AVR) 개발연구」, 한국 산업인력공단.
- 국가인권위원회(2011),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창연·강인화(2009), 「서울시 이주여성노동자 안전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2년 3월호)”,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3년 1월호)”,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설동훈 외(2011),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소라미(2009),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 「2009 한국젠더법학회 11월 세미나 자료집」, 한국젠더법학회, pp.51-77.
-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 여성가족부(2012), 「2011년도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 「2011년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
- 윤덕경·김이선·박복순(2009),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2012), “나는 이주여성이다 - 이주여성상담분석과 인권실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장명선(2007),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08), 「서울시 다문화 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09),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0),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명선·송명숙(2011),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병호 외(20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최희숙(2008),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한국의 고용 허가제를 중심으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함께해요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미래 -”, 「2009.4.22 법의 날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염.(2005), “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한국 이주여성의 실태와 과제”, 이주노동정책 세미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 (2007), “국내거주 이주여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www.wmigrant.org/xe2/?document_srl=22094&mid=article&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 . (2010), “한국 이주여성 현실에서 본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귀환과 재통합”,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 경험과 한국에서의 실천방향모색」 국제회의 발표문, IOM.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201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주여성과 관련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보고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행정안전부.
- IOM(2008), Assisted Voluntary Return (AVR). IOM.

[신문기사]

- 연합뉴스(2012. 10.26), “이혼 결혼이주여성 불법체류자 전략 급증”
- 헤럴드경제(2008.10.22) “코리안 웨딩 드림의 끝은 ‘불법체류자?’”

[웹사이트]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http://cafe.daum.net/joyfull2070/>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http://withmigrants.org/>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www.wml366.or.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통계청 <http://kostat.go.kr>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2012-정책개발-18

이주여성 일시보호시설 설립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연구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자 김재민·장명선
발행일 2012년 12월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www.seoulwomen.or.kr

깨끗하고 투명한 일처리로 청렴 재단, 청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TEL. 02-761-0031)

